

감사원 통보

제 목 담뱃세 탈루 및 조세범칙행위(PMK, BATKM 폐기물부담금 추정)
소 관 청 환경부
관 계 기 관 환경부
내 용

가- -3)-가) ○○의 담뱃세 탈루 및 조세범칙행위

○○는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 창고 내 재고를 전산상 허위로 반출 처리하거나 판매 목록 없이 제조장 인고에 가장 반출하여 인상 전 저세율 세금을 납부하고 반출재고를 축적한 후, 세율 인상 후 실제 반출하는 때는 신고납세 없이 반출판매하여 1,691억 원의 담뱃세 인상차액 창루

3)-가)-① ○○ 현황, 평상시 담배 반출행태 및 담뱃세 납세관행

담배제조·수입판매업자인 ○○¹⁾는 1989. 4. 29. 서울특별시에 담배 수입판매업자로 등록하여 담배를 수입·판매하다가, 2002. 8. 29.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

1) 1989년 [](스위스 소재)의 자회사인 [](스위스 소재)이 100%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지분구조상 모회사는 []이나 실제 경영권리제계는 회장석에 []이 있고, 중간에 [](총괄 소재) 등 지역본부가 있으며, 그 지역본부 아래 한국법인 등 각 나라의 현지법인이 있는 계통 구조로 되어 있음. ○○와 같은 현지법인은 담배가격 변경 등 범인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지역본부는 사안에 따라 []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체계임

터 담배제조업 협회를 받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 소재 제조장에서 'L' 등 6개 상표로 최근 5년간(2011년도~2015년도) 연평균 8억 2,593만 갑(수출용 담배 별도) 상당의 담배를 제조·판매(2014년 기준 매출액 7,030억 원²⁾, 점유율 19.99%)하고 있다.

2015년에는 [표 13]과 같이 국내 판매용 담배 627,188,000갑을 제조하였고, 이 중 609,394,000갑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2015년도에 판매한 담배는 위 반출량보다 1억 갑 상당 더 많은 710,219,839갑으로 2015년도에 반출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1억 갑 상당은 2014년도에 반출신고된 것이다.

[표 13] ○○의 2015년 국내 판매용 담배 제조·반출·판매 현황

(단위: 갑)

구분	2014. 12. 31. 제고	증가(제조량·반출량)	감소(반출량·판매량)	2015. 12. 31. 제고
미납세재고	11,231,000	627,188,000	609,394,000	29,025,000
반출제고	109,282,410	609,394,000	710,219,839	8,456,571

주: 1 미납세재고는 제조량만큼 증가하고 반출량만큼 감소. 반출재고는 반출량만큼 증가하고 판매량만큼 감소. 제조장은 제조장에서 내수용으로 제조한 수량·반출량은 제조 담배를 제조장 등에서 반출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출신고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수량. 판매량은 도매상 등에 판매한 수량

2) 반출제고 109,282,410갑에는 수입분 40,970갑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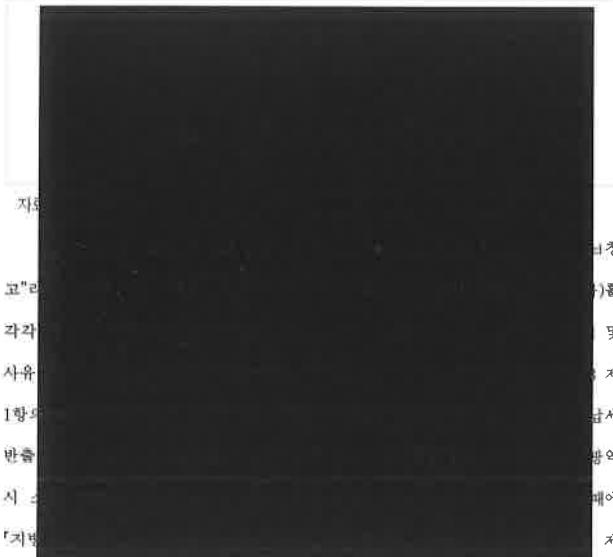
자료: ○○ 제출자료

○○는 [그림 4]와 같이 국내에서 제조한 내수용 담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인근인 ◆시, 서울 근교인 경기도 츠 및 광주광역시 츠에 물류창고(Distribution Center)를 두고, △ 제조공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를 각 물류창고로 이송하여 보관하다가 ▷▷ 등 4개 독점 도매상이나 소매점(예, 편의점) 등에

2) ○○는 매출액의 6~12%를 [] 등에 매년 로열티로 국의 저작권과 아울러 당기순이익도 전부 배당(2013년 1,570억 원, 2014년 1,432억 원, 2015년 1,917억 원)하고 있음

공급하고 있다.

[그림 4] ○○ 제조 담배의 반출 흐름도³⁾



조장 소재지를 관하는 ◆시장과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담배 반출신고를 하고 동 반출신고랑에 대하여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3) ○○의 담배 물류(배송 및 보관)는 ▽▽▽(이하 "▽▽"라 한다)가 담당하고 있으며, ▽▽는 ○○의 요청(일괄창가조건 등)에 따라 뇌창고와 서울창고는 보세창고(◆시 소재 보세창고는 ▽▽소유, 서울 근교 경기도 츠 소재의 보세창고는 ▽▽(◆) 소유 보세창고를 임대)로, 광주DC는 일반창고(▲▲▲ 소유와 비보세 일반창고를 임대)로 운용하였음

4) ○○는 1999년에 수입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수입담배 보관용으로 보세창고를 이용하였으며 국내 제조를 시작한 이후에도 그 관행에 따라 보세창고이며 뇌·서울창고를 사실상 보세 기능 없이(일부 수입품을 반입) 국내 제조 담배와 보관 창고로 이용하여 왔음. 보세창고라는 용어가 「관세법」상 보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뇌·서울창고로 지칭함

담뱃세 부과·징수기관도 지난 10여년 동안 ○○의 이와 같은 담배 반출 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창고와 서울창고가 제조장 창고에 해당하는 근거 및 사유

- 「지방세법」 제49조 및 제60조 용에 담배 제조자의 경우에는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를 기준으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를 기준으로 담배를 반출신고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1호에 담배 공급과 판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 「미납세법」이라 함)하고 있음
- 한편 ○○는 1999년에 수입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통보 신고납부하였다가 2002년 10월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제조한 담배를 반출하면서도 △ 제조공장에서 뇌창고·서울창고(보세창고)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반출로 처리·신고하였고 뇌창고 및 서울창고에서 도예상 통에 반출하는 때 담배 반출신고를 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시와 서울특별시는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이를 2013년까지 지속됨
-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2004년 4월 「내국물류인 담배를 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로 해당한다고 답변(이하 「2004년 수립문」)하였고 2015년 수립에도 「담배의 공급과 판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보세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 관행」이므로 미납세반출로 보도록 「회신」하였다
- 따라서 ○○가 제조장에서 뇌창고 통에 반출 시 미납세 반출로 처리하고 뇌창고 통에서 도예상 통에 반출하는 때 반출신고를 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시 통이 그대로 끝을 ○○과 과세청과 공히 위 두 창고를 보세구역이 아니라 제조장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그러한 과세관행이 지난 10여년간 지속·체계화되었음

이같은 관행에 따라 ○○는 [표 14]와 같이 평상시에는 △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담배에 대하여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 반출하여 뇌창고와 서울창고에 보관하다가 도매상 등 유통사에 배송하거나 광주DC로 이송하기 위하여 담배를 뇌창고 및 서울창고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반출신고를 하고 동 반출신고랑에 대하여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표 14] 각 연도별 ○○의 미납세·반출재고 보유 현황

(단위: 천 갑)

- | 연도 | 미납세 반출 재고(천 갑) |
|------|----------------|
| 2004 | 1,000 |
| 2005 | 1,000 |
| 2006 | 1,000 |
| 2007 | 1,000 |
| 2008 | 1,000 |
| 2009 | 1,000 |
| 2010 | 1,000 |
| 2011 | 1,000 |
| 2012 | 1,000 |
| 2013 | 1,000 |
| 2014 | 1,000 |
| 2015 | 1,000 |
- 5)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담배소비세와 함께 뇌창고 및 서울창고 반출시점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되었음
- 6) 행정자치부 세정-71호(2004. 4. 8.)
- 7)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관세법·국세의 해석 또는 지방세·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범이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8)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파-378(2015. 9. 23.)

구 분	2006년 ⁽⁹⁾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⁹⁾	2011년	2012년 ⁽⁹⁾	2013년	2014년 ⁽⁹⁾	2015년
반출제고	36,897	6,545	1,960	2,454	46,457	1,827	74,155	4,651	109,282	6,416
미납세제고	12,864	22,865	32,429	54,985	46,812	57,733	9,847	101,040	11,554	29,800
제고 합계	49,561	29,410	34,389	57,419	96,269	59,595	84,000	105,891	120,836	38,216

주: ○○는 담배 재고를 평상시에는 미납세제고로 보유 다만 2006년, 2010년, 2012년, 2014년의 경우와 같이 담뱃세 인상이 예상되거나 논의되는 시기에는 반출제고를 축적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음(2014년에만 실제 담뱃세 인상)

자료: ○○ 제출자료

3)-가)-② 담뱃세 인상 전에 허위반출 등의 수법으로 반출제고 부당 축적

담뱃세 부과·징수기관은 담뱃세관련세법 등에 따라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를 기준으로 담뱃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담배 제조사가 담뱃세 인상을 기회로 담뱃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실질 반출물량과 다르게 관련 장부를 관리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인상 전 세율로 미리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채 담뱃세 인상일 이후에 담배 실물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면서 반출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등으로 담뱃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3)-가)-③ 가장거래로 반출제고 부당 축적

○○는 “3)-가)-①”과 같이 납창고와 서울창고를 제조장 창고로 사용하면서 사제조공장에서 생산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여 납창고와 서울창고에 보관하다가 광주DC로 이송하거나 도매상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때에 반출한 물량에 대하여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는 담뱃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매점매석고시가 시행되

기 직전인 2014. 9. 3.에 최대 적재용량 6천만갑¹⁰⁾ 상당을 보관할 수 있는 제조장 인근인 ◆시 소재의 창고(이하 “임시창고”라 한다)를 임시로 입차¹¹⁾(입차기간 2014. 9. 3.~2015. 2. 25.)하였다. 그리고 [표 15]와 같이 △제조공장에 보관 중이던 담배 56,221,000갑을 임시창고 입차계약일인 2014. 9. 3.부터 9. 6.까지 4일 동안 판매 목적¹²⁾도 없이 임시창고로 반출¹³⁾하였고 매점매석고시 시행일인 2014. 9. 12.부터 2014. 12. 31.까지 48,413,000갑을 또한 판매 목적 없이 임시창고로 반출하고 반출신고를 하는 한편 동 신고물량에 대한 담뱃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계 104,634,000갑의 반출제고를 조성하였다.([그림 5] 참조)

- 9) 2014. 6. 11. “금연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담뱃값 인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4. 9. 2. 문행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뱃값 폐소 4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2014년 9월 초에 담뱃값 인상 및 인상폭이 거의 확실시되었다는 10) ▽▽가 임시창고의 임대면적에서 일출고 작업 등선 등을 고려하여 최대 적재용량을 산정함
- 11) ▽▽는 2014년 8월 말경(날짜 모름) ○○와 △제조공장에 근무하는 물류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복합터미널의 일부를 임대하였음
- 12)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피세되는 조세인 첨(대법원 2013두18074 판결)
- 13) 이와 같이 매점매석고시 시행일(2014. 9. 12.) 직전에 일시적으로 대량 반출하는 행위는 이하에서 설시되는 ○○의 허위반출제고 조성행위 및 □□의 반출제고 조성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 담뱃세 인상 전까지 조성된 반출제고로 담뱃세 인상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매점매석고시가 시행되면 반출량이 계한되고 이용판 반출량은 정상적인 판매량에 속장되어 결과적으로 인상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담배 제조자의 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출량 제한이 없는 매점매석고시 시행 전에 반출제고를 확보해야 할 유인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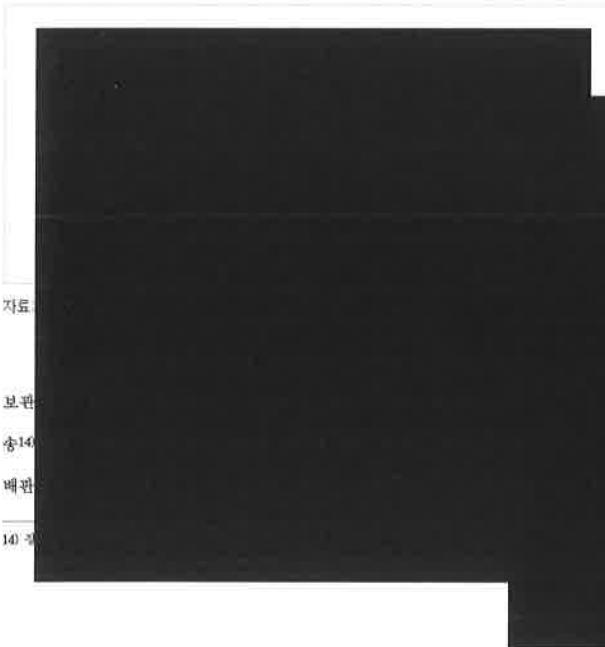
[표 15] 임시창고 반입·반출 및 재고 현황(실물흐름)

(단위: 갑)

기간	기초재고	제조장→임시창고	임시창고→비창고	기말재고
2014년 9월	0	56,221,000	21,913,500	34,237,500
2014년 10월	24,237,500	9,701,500	17,018,500	26,852,500
2014년 11월	26,852,500	20,549,500	14,940,500	32,253,500
2014년 12월	32,253,500	18,363,000	16,531,500	34,090,000
2014. 9. 3 ~ 12. 31. 조정한 가장반출재고	104,634,000			
2015년 1월	34,090,000	0	22,805,500	11,554,500
2015년 2월	11,554,500	0	11,554,500	0

자료: **□□(임시창고의 반입·반출을 관리) 제출자료**

[그림 5] **○○의 가장반출 흐름도**



부인 근거 및 사유" 참조)하여 반출·판매하였다.

○○의 담배판매를 위한 반출과 임시창고로의 반출 비교

- 판매를 위한 통장적인 반출 과정 (비창고→도매업체 등)
 - ① ○○의 축점도매업체(한미상사 등 4개 업체)가 ○○의 주문발주전신시스템인 SRS에 주문내역을 입력(송월 1~2일 전까지)
 - ② ○○의 물류팀(Product Distribution Team)이 주문내역을 확인 SAP(○○의 업무처리 전신시스템)에 판매사(도매업체명)·브랜드·수량·합계·출발 등을 입력하여 판매지시서(Sales Order)를 작성
 - ③ 주문에 따라 반출될 출하를 SAP상 이날재고고 코드에서 반출하고 코드로 전환(KR13 → KR1 (5))
 - ④ 비창고로 분리하는 (주)△△직원이 판매지시서에 따라 패킷(pallet)별로 티켓(판매사·브랜드·수량·종 기재)을 작성·슬립
 - ⑤ 청탁직원이 공장출고 시스 래핑(wrapping)·출입 브랜드상신일자기·답변을 패킷 위에 표기·제작코드·제조연월일·종류·기재)를 붙이고 패킷별 티켓내역에 따라 담배를 선별(선집선택 원칙을 잘지키지 적용)하여 패킷별로 차분히 팩스의 바코드를 단말기로 스캔하고 배송주력시스템(U-Tracker)에 배송정보를 입력한 후 패킷별로 차포장하고 패킷 티켓을 부착
 - ⑥ 배송기사가 승장(판매사·브랜드·수량·출발 종 기재)을 수령·판매·견별로 차포장된 답변을 배송
 - ⑦ 판매지시서와 배송주력시스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 ⑧ SAP에서 판매 및 반출처리
 - ⑨ ◆사에 반출신고
- 임시창고로의 반출 (제조공장→ 임시창고)
 - ① SAP 상 "이날재고"에서 "납세재고"로 전환(공장의 경우 KR200을 KR01로 변경)을 거쳐 "임시창고재고" KR06 1004로 분류
 - ② 임시창고로 배송
 - ③ ◆사에 반출신고
- 판매를 위해 임시창고에서 담배고로의 재반입·반출
 - ① 출 가장 오래된 순으로 배송할 출하를 선별
 - ② SAP 상 담배고로 입고 처리(KR06 1004 → KR1 06 1000)·판매신고는 위 2-③으로 걸음에 따라 판매처별로 차포장 및 배송하여 반출

4. 반출 재고 중 54,080,500갑을 비창고로 이

1.) 이전인 2014. 9. 11.부터 같은 해 12. 50,553,500갑(2014년 말 현재 비창고에 보관) 모두를 비창고로 이송한 후 담뱃세 사이에 반출·판매하였다.

반출재고 부당 측적

1080500갑은 2014년 말 이전에 비창고에서 반출·판매되었거나 있다가 2015. 1. 1.부터 6. 30. 사이에 비창고 등에서 34,090,000갑은 2015. 1. 1.부터 6. 30. 사이에 판매되었을

○○는 매점매석고시 시행계획이 공개된 2014. 9. 11. 현재 납창고와 서울창고에 보관 중인 미납세 반출 담배량 45,721,000갑(손상재고 24,670갑 제외)을 같은 날 반출한 것처럼 허위의 반출일자 및 반출물량을 전산조작·입력하여 정상적으로 반출처리된 것으로 가장하고, 2014. 9. 25. ◆시와 서울특별시에 위 45,721,000갑 모두를 위 9. 11. 반출한 것처럼 허위의 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였고 동 허위 반출신고 물량에 대하여 담뱃세 계 60,466,022,500원을 신고·납부¹⁶⁾(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고시 시행일 직전에 담배 50,116,500갑¹⁷⁾의 반출재고(이하 "허위반출재고"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또한 위 허위반출재고 50,116,500갑을 2014년 말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표 16]과 같이 매월 말경(12월의 경우 중순) 매점매석고시에서 정한 기준반출량¹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산조작하여 허위로 반출처리하고, 동 전산조작된 반출물량에 대한 허위의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한편 동 허위의 신고물량에 대하여 인상 전 세율로 담뱃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2014년 9월 이후부터 담뱃세 인상 전까지 총 9회에 걸쳐 허위반출재고를 반복적으로 조성하였다.

[표 16] 허위반출재고 조성 내역^{주1)}

(단위: 갑)

허위반출일	14. 9. 5	14. 9. 11	14. 9. 30	14. 10. 30	14. 11. 26	14. 12. 11	14. 12. 12	14. 12. 13	14. 12. 14
반출신고량(수령)	8,743,000	51,233,000	37,302,000	45,640,500	39,127,000	22,235,000	4,771,500	5,277,000	2,646,000
실제 반출량(판)	4,255,500	5,882,000	1,046,000	2,983,500	1,260,000	2,017,000	1,039,500	—	—
- 판매량	3,843,000	5,064,000	779,000	2,715,000	798,000	1,620,500	1,055,000	—	—
- 경주OC 아동	50,500	498,000	266,000	245,500	452,000	496,500	244,500	—	—
허위반출률(%)	4,395,500	45,721,000	36,266,000	42,677,000	37,547,000	20,213,000	3,702,000	3,277,000	2,646,000

주: 1) 실제 주문도 없고 실제 반출행위도 없이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으로 처리한 내역을 재구성

2) ◆시 및 서울특별시에 신고한 담배반출신고서의 일별 신고 내역

자료: ○○ 제출자료

즉 그 과정에서 ○○은 매월 도매상 등의 주문에 따라 담배를 실제로 판매·반출할 때에는 [별표 1] "○○ 반출 신고량과 실제 반출량 차이 분석 명세"와 같이 매월 말경(9월에는 매점매석고시 전, 12월의 경우 중순) 조성한 허위반출재고를 반출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소진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3천만 갑 내지 4천 5백만 갑 정도의 허위반출재고를 조성하여 매월 말 허위반출재고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말 현재 55,684,870갑¹⁹⁾의 허위반출재고를 납창고 및 서울창고에 축적하였다가 이를 담뱃세 인상일인 2015. 1. 1.부터 6. 30. 사이에 인상된 담배가격으로 반출·판매하였다.

3)-가)-③ 담뱃세 탈루

담뱃세관련세법 등에 따르면 담뱃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실제 반출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담뱃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담배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

16) 허위 반출신고 물량 45,721,000갑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43,960,741,500원은 반출한 다음 달인 2014년 10월 말 전국 시·군에 신고·납부하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185,234,000원은 다음 달인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지하여 납부하였으며, 폐기물부담금 320,047,000원은 2015년 3월말 연단위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장관이 고지하여 납부함

17) [표 16]과 같이 9월 5일 4,395,500갑, 9월 11일에 45,721,000갑을 실제 반출행위 없이 전산상으로 반출처리하였음

18) 고시에 규정된 반출량 한도(2014.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 [표 19] 참조

는 때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신고 물량에 대하여 반출시점의 세율에 따라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는 "3)-가)-②"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허위의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부당 반출재고 계 106,238,370갑(임시창고를 이용한 반출재고 50,553,500갑, 허위반출재고 55,684,870갑)을 담뱃세 인상일인 2015. 1. 1.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판매(임시창고에 보관된 반출재고의 경우에도 임시창고를 거쳐 제조장인 담뱃세로 반입되었다가 2015. 1. 1. 이후 제조장인 담뱃세로부터 반출되기는 마찬가지)하였다.

따라서 담뱃세 부과·징수기관은 2014년 중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작성·제출된 허위의 반출신고 물량 계 106,238,370갑에 대하여 신고·납부된 담뱃세 계 140,500,244,325원을 부인하고, 담뱃세 인상일인 2015. 1. 1.부터 담배 실물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사실에 따라 인상된 세율에 적용하여 산출한 담뱃세 계 309,021,106,528원(가산세 별도, 2014년 담뱃세 약 등과의 차액 계 169,120,861,203원)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는 [표 17]과 같이 부당 반출재고 106,238,370갑을 2015. 1. 1.부터 6. 30.까지 반출신고 및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제조장에서 반출·판매(일부 자가소비)함으로써 [표 18]과 같이 인상된 세율에 따라 산출한 담뱃세 계 169,120,861,203원(아래 "3)-가)-④"에 설시한 포탈세 액 115,003,035,525원 포함)을 탈루하였다.

[표 17] 2014년 말 반출재고의 판매 현황

(단위: 갑)

구분	2015년 1월	2015년 2월	2015년 3월	2015년 4월	2015년 5월	2015년 6월 ~ 8월	자기소비 품	계
부당 반출재고 판매수량 품	24,244,840	29,247,710	32,465,730	20,569,830	2,567,360	89,270	77,670	109,282,410 ^(b)

주: 109,282,410갑에는 정상적인 반출재고 3,044,040갑(광주DC 재고)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당 반출재고 판매량은 이를 제외한 106,238,370갑임
자료: ○○ 제출자료

[표 18] ○○의 담뱃세 탈루세액 등 명세

(단위: 원)

담뱃세 충류 (소관부처, 인상차액)	담배소비세 (통정자치부, 365)	지방교육세 (통정자치부, 123)	국민건강증진세 (보건복지부, 387)	폐기물부附加금 (환경부, 17)	연초분산부정회기금 (기획재정부 5)	개별소비세 (국세청, 594)	계
탈루세액 품 ^(b)	38,883,245,420	13,014,200,325	51,738,086,190	1,849,547,638	531,191,850	63,105,361,780	169,120,861,203

주: 탈루세액 등은 담뱃세 인상 전후 종류별 인상차액 등에 부당 반출재고 106,238,370

값을 곱하여 계산

또한 허위의 반출일과 반출물량을 전산조작·입력하여 반출처리하고, 허위의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반출 시점을 조작한 행위는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가산세 42,792,815,436원²⁰⁾ 및 25,242,236,712원²¹⁾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각 시·군²²⁾, 국세청 등 담뱃세 부과·징수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20) 2015년 담배소비세 산출세액의 40%(106,238,370갑×세율 1,007원×40%)

21) 2015년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의 40%(106,238,370갑×세율 594원×40%)

22) 담배소비세는 시·군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부과·징수권이 있음

못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질파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3)-가)-②-⑦"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가 2014년 중에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반출하여 임시창고에 보관하다가 날창고로 이송하여 보관하면서 담뱃세 인상일인 2015. 1. 1. 이후에 판매를 위하여 반출한 행위는 비록 담뱃세 인상일 이전에 제조공장에서 반출하였고 반출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제조장(남창고)으로 다시 반입된 후 반출된 것으로서 아래 "임시창고로의 반출행위 부인 근거 및 사유"와 같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의판을 추가(들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해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한 것에 불과하여 담뱃세 인상차액을 탈루할 목적의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4년 중에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반출행위 및 신고·납부 세액을 부인하고 2015. 1. 1. 이후에 남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한 실질에 따라 반출행위 당시의 세율, 즉 인상된 세율 등에 따라 담뱃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남창고의 저장 여력이 부족하여 임시창고를 이용하였을 뿐 임시창고의 재고를 남창고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판매를 위해서는 남창고를 거쳐야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창고는 사실상 제조장 창고인 남창고의 보조시설로서 제조장의 일부로 판단되고 따라서 ○○는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반출 시 반출신고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조장 내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판점에서 보더라도 남창고에서 판매를 위해 반출할 때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시창고로의 반출행위 부인 근거 및 사유

• 임시창고는 유동창고로서의 역할·기능이 없고 재고도 남창고에서 통합 관리

① 임시창고에는 ○○나 △△장원이 근무하지 않았고 담배를 판매 목적 품으로 배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예: 포장기기 등)나 시설이 없었을 뿐 아니라

- ○○ SAP(간접시스템)에서도 남창고와 통일한 재고체 코드(KF06)를 사용하면서 판매나 다른 DC로 출판시에는 남창고에 위치한 재고와 통합하게 관리되었다는 증거

[내용 시 임시창고나 남창고 구분 없이 남창고에 있는 재고와 임시창고에 있는 재고 중 개별 오류판 번으로 재분류 혹은 선별판을 일정률을 지정하기 위해 같은 품목이 남창고에 있다 하더라도 임시창고에 더 오류판 재고가 있는 경우 오류판 번으로 필요한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맞춰 예상대로 오류판에 필요한 수령을 남창고로 재분류한 후 주문에 따른 배송을 하였음]

• 임시창고를 거친 거래라 하더라도 담뱃세 인상 전 거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

②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 반출된 재고는 판매목적 품에 따른 반출이 필요한 때 모두 남창고로 재분류되었으나 판매 목적 품으로 반출되는 품 ○○의 형성시 담배번호 흐름과 비교하면 단순히 충전에 임시창고를 거치는 행위(재배인증)가 수기일 것 외에 차이가 없음

* 창원자 유통세계도 세 조강세 있다. 담배를 반출·납부·상고·부록·상장·제조장·임시창고를 일련으로 일련으로 사용하였고, 임시창고는 반송·보관·상고·납부·상고·부록·상장·제조장·임시창고를 일련으로 사용하였고 있음

[내용 예전에 ○○ DC 간 이동을 위해서는 SAP프로그램(화재판산시스템)으로 재고관리, 충전출퇴 품, 감두우량, 화재판산시스템(SFSI-U-TS), 프로그램 품 주문, 당장 재고관리 품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담배를 주문이 맞추어 재분류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업하기 위해 현장 직원과 포장기계 품이 필요하다. 임시창고는 아무도 정비나 시설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 특수로 품이 이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 남창고에 재분류하거나 각각의 블록에 따라 다시 반출하였음]

• 임시창고는 담뱃세 인상 전 반출재고 조성 품도로만 사용

③ 임시창고의 사용 축면에서도 담뱃세 인상과 함께 따른 예정예상고시 시장이 충분이 예상되는 시장인 2014. 9. 3에 임시창고를 입대하였고 그 이후 2015. 2. 25 까지 사용하면서 담뱃세 인상 견인 2014. 9. 3부터 2014. 12. 31 까지 계 1년 내로만 갑을 반입하였다가 담뱃세가 인상된 2015. 1. 1 이후에는 반입이 없었음

아울러 실질파세 원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조장에서 담배를 과세반출하고

임시창고에 보관하다가 다시 남창고로 이송한 후 반출한 것은 제조장으로 환입하였다가 재반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납부 세액의 환급은 별도로 하고 「

23) 남창고와 임시창고가 동일한 재고체 코드를 사용하나 내부적으로 KR06 1000, KR06 1004로 구분하였음

24) 임시창고와 남창고의 담배를 품목별, 재고별, 생산일자별로 전산상으로나 실무적으로 통합관리하면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재고 관리.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말보로 끝드 제품 재고를 300박스[1. 1. 생산-100박스(임시창고 위치), 1. 10. 생산-20박스(미납세제고, 남창고 위치), 1. 15. 생산(전산반출재고, 남창고 위치)-150박스, 1. 31. 생산-30박스(미납세제고, 남창고 위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 2. 말보로 끝드 250박스 주문이 들어오면, 1. 1. 생산분 100박스, 1. 10. 생산분 20박스, 1. 15. 생산분 130박스를 재분류하여 제조장(재정)하고 대정한 재고에 뒤로 티켓을 붙여 배송차량에 상차하여 배송, 만약 280박스 주문이 들어오면 1. 1. 생산분 100박스, 1. 10. 생산분 20박스, 1. 15. 생산분 150박스, 1. 31. 생산분 10박스를 재분류하여 대정한 재고에 티켓을 붙여 배송차량에 상차하여 배송함

25) 남창고, 서수창고, 광주DC는 모두 ○○의 DC 역할을 수행하였고, 남창고는 판매 외에 다른 DC 간 이동을 해주는 허브 역할을 수행

26) 장부(SAP)상으로도 입고처리

지방세법」 제55조, 제6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납창고)에서 반출하는 때 반출신고하고, 반출행위 당시의 세율로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가)-④ 조세법칙 행위

○○가 "(3)-가)-②"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제조장 창고인 납창고와 서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조작하여 반출일과 반출물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한편 허위의 반출처리물량에 대하여 2014년 중에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등 반출신고물량에 대하여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여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담뱃세의 인상일인 2015. 1. 1. 이후에 담배를 반출·판매할 때는 반출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상차액 계 115,003,035,525원(부당 반출재고 106,238,370갑×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 인상액 1,082.5원)을 포함한 행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각 시·군 및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3)-가)-⑤ 매점매석고시 위반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의 전산조작·입력 등으로 부당하게 반출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를 한 행위("(3)-가)-②")에 대하여 실물 담배의 제조장 반출시점을 확인하고 등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반출량을 재산정한 후 매점매석고시 상의 월별 기준반출량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표 19]와 같이 ○○는 2014년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매점매석고시 상의 반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준반출량 73,382,557갑을 각각 0.8% 및 6.1%씩 초과하여 담배를 반출함으로써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의 실제 담배 반출 현황(2014년)

(단위: 천 갑 %)

구 분	9월	10월	11월	12월
기준반출량 ^④ (A)	45,253	73,383	73,383	73,383
실제 반출량 (B)	43,733	72,954	73,974	77,857
초과 반출량 (C=B-A)	—	—	691	4,474
초과율 (D=C/A)	—	—	0.8	6.1

주: 고시에 규정된 기준반출량: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 단 9월은 9.12 이후 일할 계산

자료: ○○ 제출자료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 -3)-나] □□과 ■■의 담뱃세 탈루 및 조세법적행위

□□이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 창고 내 일부 구역을 ■■에 일대체약방 하여 놓고 상품 이동 일이 ■■에 전산상으로 허위 반출 처리하여 인상 전 세금을 납부하고 반출세고를 축적한 후, 담뱃세 인상 후 실제 반출할 때에는 신고납세 없이 반출판매하여 302억 원의 담뱃세 인상을 탈루

3)-나)-① □□과 ■■의 현황 및 평상시 담배 반출·납세

영국의 “■■”은 1990년 10월 담배 수입판매법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0년 12월 ■■를, 2001년 9월 담배 제조법인인 □□을 각각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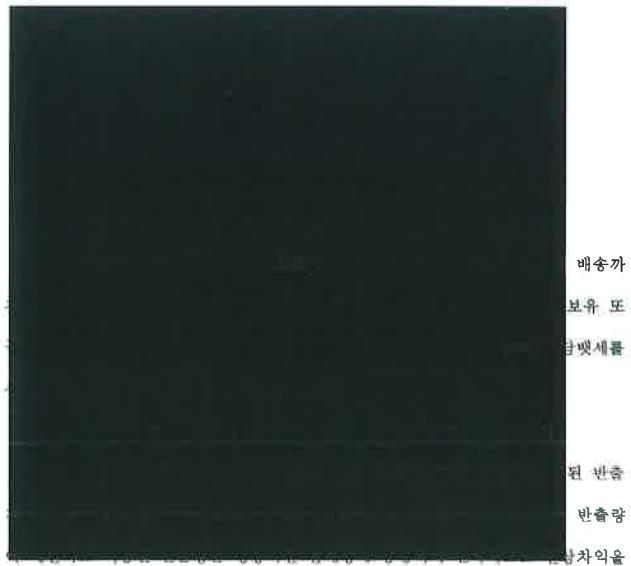
그리고 ‘c’ 등 담배브랜드 13종의 상표권(trademark licenses)을 소유한 ■■는 담배 제조를 □□에, 담배 판매를 ▲▲에 각각 위탁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5억 3,131만갑(수출용 담배 별도)의 내수 담배를 시에 소재한 □□의 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2014년 기준 매출액 4,521억 원, 점유율 12%)하고 있다.

□□은 2015년에 내수용 담배 465,778,180갑을 제조하였고, 이 중 452,323,217갑을 반출하여 ■■에 판매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는 2015년에 내수용 담배 계 474,381,862갑을 판매²⁷⁾하였는바, 동 판매량에는 2014년도에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반출 재고 24,630,000갑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은 ■■와 담배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그림 6]과 같이 □□이 생산하여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에 보관한 담배를 ■■의 주문에 따라 ▲▲의 전국 지사²⁸⁾나 유통창고 또는 판매처에 배송하기 위하여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로부터 반출한 때에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반출신고를 하고 동 반출신고물량에 대하여 담뱃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림 6] □□ 제조 담배의 유출 구조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출량 제한이 없는 매점매석고시 시

27) ▲▲에 위탁판매

28) 배송 업무는 <<▷와 계약하여 <<▷가 수행하였고, ▲▲의 지사는 2015년 초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에 물류센터를 설치함

29)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지급된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는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회사로 계약에 의해 제조와 저장, 배송, 판매를 모두 □□과 ▲▲에 위탁

30) 담뱃세는 소비자에게 담배가 판매(전가)되기 전 반출 시점에 제조자 등이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반출제고는 기업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

31) 주석 43번(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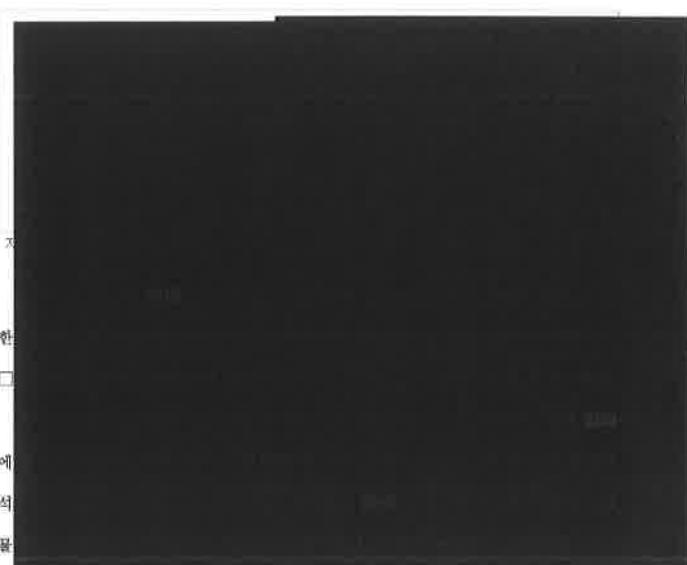
행 전에 반출재고를 확보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와 □□이 반출재고를 통해 담뱃세 등 인상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유한 반출재고가 없었으므로 반출량이 제한되는 매점매석고시 시행 전³²⁾에 ■■에 담배를 반출시켜 이를 축적하여야 했다.

한편 □□과 ■■는 2014. 7. 1. 전례 없이 □□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 일부 구역을 ■■에 임대하는 계약³³⁾을 체결하였다.

이는 담뱃세 인상차익을 얻기 위해 ■■의 반출재고를 미리 축적하여야 함에도 담뱃세 인상이 논의되던 2014년 6월³⁴⁾에 ■■는 반출재고를 보관할 창고를 갖고 있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매점매석고시 시행 전까지 □□이 위탁생산한 담배를 ■■에 장부상 판매하는 시점에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의 □□ 구역에서 ■■ 임차구역으로 담배를 이동시킨 것처럼 하고 이를 반출로 처리 및 신고하여 ■■가 반출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³⁵⁾([그림 7] 참조)

[그림 7] □□ 제조장 창고 내 ■■ 임차구역



22.9배)인 것처럼 하여 2014. 9. 21. 시에 허위의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동 허위 반출신고불량에 대하여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는 위 31,922,220갑의 허위 반출재고를 매점매석고시 시행 전 ■■의 임차공간에 보유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0] 2014. 9. 12. 정오 전 □□의 반출신고 내역

(단위: 갑)

32) 최근 담뱃세 등 인상 시점인 2004년에도 매점매석고시가 시행되어 2014년 인상 논의 초기부터 매점매석고시 시행은 예상 가능

33) □□, ■■, ▲▲ 등 3개사는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의 □□ 제조공장 내 물류창고의 백(rack: 물품을 나열 또는 적납시키기 위한 선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 23~36번 백(최대 적재률량 약 2,700만 갑), ▲▲가 37번 백(최대 적재률량 약 200만 갑)을 각각 임차

34) 2014. 5. 27. 이한구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해 6. 11. 보건복지부가 “금연의 날” 행사 브리핑에서 “담뱃세 상당폭 인상 적극 추진” 계획 발표

35) 실제 □□와 ■■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지사 등 ■■의 판매처로 즉 제조장 외로 배송할 때 반출 신고를 하던 기준의 방식과 달리 □□이 ■■로 매출처로 하는 시점에 반출로 처리 및 신고를 함

36) 통상적인 반출량보다 많은 양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신상으로 ■■로 판매된 것으로 처리하는 때에 ■■의 임차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임

반출 이력		설정 있는 상태에서 책정 반출한 물	계
9. 11 제고	9. 12 정오 전 입고 처리량 ³⁷⁾		
14,260,720	8,411,500	22,672,220	9,250,000
			31,922,220

주: 2014. 9. 1 ~ 9. 11 생산한 후 입고하지 않은 물량을 9. 12 정오 전 입고된 것으로 처리

자료: □□ 제출자료

또한 이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조성된 31,922,220갑은 2014년 9월 중에 대부분 실제 반출되어 판매로 소진되었지만, 위에서 설시한대로 매점매석고시 시행 직전 반출 처리된 위 31,922,220갑이 원인이 되어 매점매석고시 시행 이후에 매월 □□이 매점매석고시에서 정한 기준반출량에 해당하는 43,555,054갑 상당의 담배를 ■■■ 임차구역으로 이송한 것처럼 반출로 처리하여 매점매석고시의 반출량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서도 [표 21]과 같이 이전에 없던 반출재고를 매점매석고시 시행 이후에도 매월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2014. 12. 31. 담뱃세 인상차익과 직접 관련되는 허위 반출재고 24,630,000갑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1] 매점매석고시 시행 후 □□의 기준반출량 및 ■■■의 반출재고 현황
(단위: 갑)

구분	8월	고시 시행 후 9월 일	10월	11월	12월
기준반출량	—	26,858,950	43,555,054	43,555,054	43,555,054
□□ 반출 신고량	—	27,240,600	43,551,800	44,747,020	47,324,880
월말 ■■■의 반출재고 ³⁸⁾	0	12,001,100	14,155,540	20,731,180	24,630,000 ³⁹⁾

주: 1. 전월 반출재고와 당월 □□이 반출 처리한 물량을 토대로 판매하고 남은 재고
2. 12월말 반출재고 24,630,000갑의 경우, 전날인 12. 30 까지 전월재고 및 당월 반출처리된 물량을 모두 판매하고 12. 31에 일시 반출 처리된 물량임
자료: □□ 제출자료

3)-나)-③ 담뱃세 탈루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에 따르면 “반출”이란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 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 행위³⁷⁾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면 담배가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경우 또는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가 제조장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로 되어 있다.

따라서 ■■■ 소유의 2014. 12. 31. 현재 재고 24,630,000갑의 경우 담배 제조자인 □□의 공장인 제조장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 임차구역으로 반출된 것처럼 위장된 것일 뿐 여전히 □□의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제조장 내 반출로 예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위 “반출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뱃세 신고·납부의 기준이 되는 반출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³⁸⁾

더욱이 설사 제조장 내 임차구역으로 반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출이 되기 위해서는 반출처리 시점에 담배 실물이 ■■■의 임차구역에 물리적·현실적 으로 이동되었어야 하나 아래 “제조장 내 구역 간 담배의 이동을 반출로 볼 수 없는 이유 및 근거”와 같이 □□과 ■■■는 담배의 매출·매입과 이에 따른 반출

37) 반출이라 함은 제조장 밖으로의 반출을 말하며 반출원인은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거래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38) 설사 이를 반출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 임차구역이 □□의 제조장 경계 내 설치될 고립되어 있으므로 최종 판매처로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의 공장부지(제조장)로 들어왔다 나기야 되는 결과가 되고, 반출은 제품을 제조장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하는 사실 행위(『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로서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거래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는바(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지방세법」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 또한 반출이 되어 또 한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므로 ■■■의 임차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반출이라고 주장할 실익은 없이 보임

처리를 장부상으로만 하였지 임차구역으로 물리적 이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르더라도 반출은 되지 않았다.³⁹⁾

제조장 내 구역 간 담배의 이동을 반출로 볼 수 없는 이유 및 근거

- 제조장 내에서 제품의 물리적 이동도 없는 품 임대차계약은 반출제고 축적을 위한 위장행위에 불과
- 은 2014. 7. 1. ■■와 위 창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로 담배를 판매하는 시점에 ■■가 관리하는 임차구역(□□의 권리구역이 아니므로 □□의 제조장이 아니라고 주장)으로 담배의 수리를 이용하고 이에 따라 반출 처리하였다고 주장
- 그러나 실제로는 □□의 반출처리한 물량이 ■■의 락(rack) 물량을 나누 또는 격납시키기 위한 선반 구역으로 이동 되지 않 있으며 따라서 설사 □□과 ■■의 주장대로 임차구역이 제조장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반출 행위는 없었음

- 즉 계약 시작일인 2014. 7. 1. 전후 ■■ 임차구역인 23~36번 블록의 재고 현황을 보면 [표 22]와 같이 같은 날부터 임대차계약이 효력을 갖기 되고 전날까지 재고가 없었으며 당일 5,803,300길을 매입하여 전량 외부로 배송·판매하였으므로 “실물이 물이 있었을 경우의 재고”는 0일이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10,073,000길의 재고가 있었는비 계약체결과 상관없이 그 전날 인 6. 30. □□의 재고(전날까지는 □□의 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2] 계약체결일(2014. 7. 1.) 전후 ■■가 임차한 블록의 재고 현황

(단위: 길)

구분	6. 30.	7. 1.	7. 2.
■■ 임차구역(23~36번 블록) 실사 재고	12,631,500	10,073,000	11,455,000
정부청 재고	-	0	0
실물이동이 있었을 경우의 재고	C=A-B □□에서 ■■로의 반출량(A) ■■에서 ▲▲로의 판매량(B) (외부 배송량 B)	- 5,803,300 - 5,803,300	- 500 1,109,300 1,109,300

주 제조장 물류창고에서 외부 배송(▲▲지사 및 편의점 물류창고 등)되는 시점에 ■■에서 ▲▲로 판매처로
자료: □□ 제출자료

③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담뱃세 인상에 대응으로 반출인 9. 12과 12. 31 전·후일의 계약주체별 계약상 권리구역의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이 해당 날짜들에 □□에서 ■■로 각각 31,922,000길과 24,919,000길을 반출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그 전·후 기간 동안 반출처리에 따른 재고 변동이 없었으며 [별표 2] ■■ 임차구역의 일별 재고 현황(2014년 9월~12월)과 같이 9월과 12월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이는 미친가지임

[표 23] 대량 반출일 전후 소관 블록 재고 현황

(단위: 길)

- 39) 절과적으로 □□과 ■■는 담뱃세 인상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반출에 따른 실물 이동의 의시도 없으면서 반출제고 조성을 위해 □□ 제조장 창고 내에 임대차계약이라는 허울을 씌워 놓은 것에 불과

구분(소관 블록 번호)	2014. 9. 11.	2014. 9. 12.	2014. 9. 13.	2014. 12. 30.	2014. 12. 31.	2015. 1. 1.
□□(35~51)	1,644,500	1,566,500	1,566,500	7,125,000	6,901,000	6,901,000
■■(23~36)	9,692,500	8,500,500	10,240,500	22,902,000	22,062,000	22,062,000
▲△(37)	539,500	0	72,000	1,682,000	1,682,000	1,682,000
비고	9. 12. □□에서 ■■로 31,922,000길 반출처리			12. 31. □□에서 ■■로 24,919,000길 반출처리		

자료: □□ 제출자료

- ④ 한편 □□과 ■■는 2014. 7. 1. (설비소비세 등의 인상이 논의되었던 시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표 24]와 같이 담뱃세 인상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만 제조장 내 □□ 구역에서 ■■의 임차구역에 서류상으로 반출처리하여 ■■에 반출제고가 발생

[표 24] 2014년 ■■ 반출제고 현황

(단위: 길)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반출제고	-	-	-	-	-	-	-	-	12,001,000	14,155,500	20,231,100	24,600,000

자료: □□ 제출자료

- 그러나 □□과 ■■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통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반출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적이 없고 □□과 ■■ 및 ▲▲는 영국의 ▲▲ 그룹 내의 회사(계열)로서 위 계약에 각각 서명한 대표자가 통일인(FAO)임

- ⑤ 따라서 □□가 2014. 7. 1. □□ 소유의 청고 일부를 ■■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를 ■■에 판매하는 시점에 ■■ 임차구역으로 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그 반출은 실물이동에 따른 반출이 아닌 전산상 또는 서류상 반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약도 「지방세법」을 세법 등에 규정된 반출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

그러므로 담뱃세 부과·징수 기관은 “3)-(나)-②”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

□과 ■■가 반출신고 기준시점 임의변경 및 허위·가장반출신고의 수법으로 부정하게 반출제고 24,630,000길을 조성한 후 담뱃세 인상일인 2015. 1. 1.부터 □□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였으므로 2014년 중에 반출신고된 허위의 반출신고 몰래 대하여 신고·납부한 담뱃세 계 32,573,175,000원을 부인하고, 현실적인 반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2015. 1. 1. 인상된 세율에 따라 담뱃세 계 71,781,672,000원(가산세 별도, 2014년 남부세액파의 차액 39,208,497,000원)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과 ■■는 반출신고 기준시점 임의변경 및 허위 반출신고 등의 방

40) 외국인(호주 국적)

법으로 확보한 반출재고 24,630,000감을 [표 25]와 같이 담뱃세 인상일인 2015.1.부터 2월까지 □□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고도 반출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반출·판매하여 [표 26]과 같이 담뱃세 인상차액 계39,208,497,000원을 탈루(아래 "3)-나)-④"에 설시한 포탈세액 26,661,975,000원 포함)하였다.

[표 25] □□의 2015년 담배 반출신고 수량 및 실제 배송수량 비교¹⁾

구분	(단위: 감)		합계
	1월	2월	
반출신고 수량(A)	21,740.220	27,246.510	48,986.730
실제 배송수량(B)	46,138.940	29,521.690	75,660.630
차이(C=A-B)	24,398.720	2,275.180	26,673.900 ²⁾

주: 1. 2015년 실제 배송수량과 반출신고 수량의 차이를 2014년 말 반출재고를 반출판매한 수량으로 추정

2. 2014년 말 반출재고 24,630,000감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2015년 2월까지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된 것으로 추정
자료: □□ 제출자료

[표 26] □□의 담뱃세 탈루세액 등³⁾ 명세

(단위: 원)						
담뱃세 종류	담배소비세 (소관부처 인상차액)	지방교육세 (행정부처부 12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보건복지부 461)	폐기물부양금 (환경부 17)	연초증산인정회기금 (기획재정부 5)	개별소비세 (국세청, 594)
탈루세액 등	9,014,580,000	3,017,175,000	11,994,810,000	428,582,000	123,150,000	14,650,220,000

주: 탈루세액 등은 담뱃세 인상 전후 증류별 인상차액 등에 부당 반출재고 24,630,000

감을 곱하여 계산

아울러 거짓으로 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

로 반출 시점을 조작한 행위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및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9,920,964,000원⁴¹⁾ 및 5,852,088,000원⁴²⁾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각 시·군 및 국세청 등 담뱃세 부과·징수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질파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제조장 창고 내에 있는 ■■의 임차구역으로 실물을 이동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입력하고 이를 반출로 처리한 것은 아래 "■■ 임차구역으로의 반출행위 부인 근거 및 사유"와 같이 실질은 □□이 담배를 생산한 후 이를 미납세재고 상태로 보관하다가 ■■의 주문에 따라 그 판매처로 배송하기 위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인데도 이와 꾀리되는 비합리적인 의문을 추가(들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빙기 위한 것)한 것이 불과하여 담뱃세 인상차액을 탈루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4년 중에 제조장 내에서 임차구역 간 이동을 반출로 처리한 행위를 부인하고 2015.

1. 1. 이후에 □□ 제조장 창고에서 담배를 반출⁴³⁾한 실질에 따라 반출행위 당시의 세율, 즉 인상된 세율 등에 따라 담뱃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임차구역으로의 반출행위 부인 근거 및 사유

① □□과 ■■는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특수관계자이며 임대차계약에 서명한 두 회사의 대표자가 통일인으로서 거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행위이다.

41) 2015년 담배소비세 산출세액의 40%(24,630,000감×세율 1,007원×40%)

42) 2015년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의 40%(24,630,000감×세율 594원×40%)

43)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조작하여 피세하는 것으로 담배의 소비와 일절한 사건을 계기로 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에서는 반출시점을 그 과세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통해 할동의 어려움을 주구할 이유가 있는 점

② 이를 위해 그동안 반출제고를 두지 않은 두 회사로서는 매점매식고시 시장 후에는 반출량이 제한되므로 그 전에 반출제고를 확보해 두면 연말까지 반출량 제한을 따르더라도 이를 연말까지 유지하여 담뱃세 인상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고시 시장 전에 반출제고를 확보해야만 하며 유인이 있었고

- 이에 따라 고시 시장(2014. 9. 12. 경)과 같은 2014. 9. 12. 새벽 2시 40분경 및 6시 5분경 2차례에 걸쳐 단 몇분 만에 일정금반출량의 약 30배에 달하는 그것도 실물 없는 반출량 9,250,000길이 포함된 31,922,220길의 이해적인 물량을 일시에 반출처리하여 갑자기 반출제고를 두기 시작하였다는 점

③ 일대차계약 체결 전후하여 □□에서 생산한 담배를 □□이 직접 ■■■가 지정하는 소매인 품에 유통하는 유통구조에 변함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유통구조 하에서 글이 반출을 위한 ■■■의 일자구역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두 회사 간의 청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반출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실질적·고리되는 비합리적인 의문을 추가(들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가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혁력을 부당하게 알기 쉬운 것)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반출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에 판매하고 반출처리한 시점에 담배 실물의 물리적·현실적 이동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이는 □□이 ■■■의 일자구역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자신의 재고관리구역으로 인식한 차 반출처리와 상관없이 흥진처럼 □□의 판의 다른 재고판리를 한 때문이라고 해석되는 점

※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14년 중에 제조장 내에서 일자구역 간 이동을 반출로 처리한 행위를 부인하고 2015. 1. 1 이후에 □□ 제조장 청고에서 담배를 반출한 실질에 따라 실제 반출행위 당시의 세율 즉 인상된 세율 등에 따라 담뱃세를 부과정수하여야 침

3)-나)-④ 조세범죄행위

□□과 ■■■가 "3)-나)-②", "3)-나)-③"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담배 반출신고 기준 시점을 담배가 □□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에서 □□의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 내 ■■■가 임차한 공간으로 이송된 때로 임의 변경하고, 담배 실물의 반출 또는 이행행위 없이 전산조작·임력만으로 담배의 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하여 반출신고하고 동 반출신고를 양에 대하여 담뱃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2014. 12. 31. 현재 조성한 반출재고 24,630,000길을 2015. 1. 1부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면서 반출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개별소비세 인상차액 계 26,661,975,000원(부당 반출재고 24,630,000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 인상액 1,082.5원)을 포탈한 행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담뱃세 부과·징수기관인 각 시·군 및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3)-나)-⑤ 매점매식고시 위반

한편, 감사원은 □□이 "3)-나)-②"의 내용과 같이 담배 실물의 반출행위 없이 전산조작·임력하여 장부상으로 반출처리한 후 반출신고한 데 대하여 실물 담배의 제조장 반출시점을 확인하고 동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반출량을 재산정한 후 매점매식고시 상의 월별 반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표 27]과 같이 □□과 ■■■는 2014년 9월, 10월 및 12월 등 3개월 동안 매점매식고시에 규정된 반출기준량 43,555,054길(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을 각각 37.0%, 2.5% 및 15.3% 초과하여 담배를 반출⁴⁴⁾ 또는 매입함으로써 매점매식고시를 위반하였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27] □□의 실제 담배 반출 현황

(단위 : 천 길, %)

44) □□이 반출한 담배 전량은 ■■■가 매입하였으므로 ■■■ 역시 매점매식고시에 따른 기준매입량을 초과하여 담배를 매입(2014년 1월~8월 월평균 매입량의 104%)함에 따라 매점매식고시 위반에 해당

구 분	9월	10월	11월	12월
기준반출량(A)	26,858	43,556	43,555	43,555
실제 반출량(B)	36,800	44,629	39,567	50,234
초과률(C=B-A)	9,942	1,074	-	6,679
초과율(D=C/A)	37.0	2.5	-	15.3

주) 고시에 규정된 기준반출량: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 단 9 월은 9.12 이후 일할 계산
자료: □□ 제출자료

관계기관 등 의견

행정자치부는 ○○와 □□의 반출 행위에 대해 ○○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납찰고(또는 서울창고)로 바로 미납세반출 하였건 임시창고로 납세반출 했다가 다시 납찰고로 반입하였건 상관없이 납찰고(또는 서울창고)에서 실제 판매처 등으로 반출되는 시점에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2015년에 납찰고(또는 서울창고) 밖으로 반출하는 시점에 그 당시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 경우 「지방세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제조장 내에서의 반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조장 내 소비, 경매 등에 의해 환가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데 제조사의 제조장 내 도매업자의 임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제조장 내이기는 마찬가지로서 통상 제조장 밖에서 행해지는 도·소매 유통 단계가 제조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반출이 아니며 따라서 2015년에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반

출하는 시점에 그 당시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상 법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혀위반출 등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 탈루 및 조세법칙 행위에 대해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166개 시장·군수가 원활하게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지원하고, 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실제 반출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상호 협의·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조사를 통해 개별소비세 추징 및 조세법칙 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은 ○○와 □□의 혀위반출 등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 탈루 및 조세법칙 행위에 대해 앞서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동일한 법리로 「지방세법」상 반출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도 담뱃세 추가가 정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법 전문가 자문결과(□□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A 교수)

▶ ○○와 □□ 공히 담뱃세 인상 직전에 평상시 반출 및 납세관행과 달리 일반창고를 입차하거나 제조장 내 창고를 입차하는 행위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취한 것은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 포함)을 인상되기 전 세출로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회피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제조장에서 판매를 위해 실제 반출된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 포함)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한편 기획재정부는 ○○와 □□ 등 담배 제조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반출량 자료를 초과하여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점매석고시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해관계자 의견 및 검토결과

○○는 '남세외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미남세 반출) 이 경우 남세외무가 미남세 반출 당시에 성립하여 징수가 유예되었을 뿐이므로 2015년 반출·판매 시에 미남세 반출 당시인 2014년의 세율(인상 전 세율)에 따라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더군다나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만 남세외무가 성립하는데 시공장만이 제조장이고 남·서울창고는 ○○가 소유·운영하지 않고 여하한 제조 또는 제조유사행위 없이 제품을 보관하기만 하는 보세창고일 뿐이므로 ○○가 남·서울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한 때 담배소비세 등 남세외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에 따르더라도 2014년 중에 제조공장에서 반출할 당시의 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남세외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미남세 반출 장소로 나갈 때(반출) 뿐만 아니라 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미남세 반입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도 당연히 남세외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다만 이증과세 방지를 위해 미남세 반출 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⁴⁵⁾

또한 「지방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

45)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가 2015. 12. 29. 개정되어 풍전에는 제조장(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미남세로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2016. 1. 1. 이후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남세외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미남세 반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는 바, 이는 미남세로 반입된 장소(○○의 경우 남·서울창고)에서 반출될 때에도 남세외무가 성립된다는 반증이기도 함 즉 남세외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미남세 반출이 허용될 필요가 없음

장을 말하는 바 이는 그 부지의 연속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관리인에 의해 관리되며 그것이 1개의 제조장이라고 인정되는 실태에 있는 것⁴⁶⁾이다.

○○는 2002년 10월부터 경상남도 ◆시에 담배 제조공장을 두어 담배를 제조하고 남·서울창고를 제조장 창고로 운영하면서 아래 "남·서울창고의 운용실태"와 같이 남·서울창고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조담배의 보관 및 배송 업무 등을 직접 관리하여 왔다. 그리고 제조장(공장)에서는 제품 제조 뿐 아니라 제품을 보관하기도 하는 것이며 그 보관 장소인 창고를 제조시설이 속한 일단의 부지에 연속하여 두건 그 부지 밖에 두건 이는 제조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뿐인데도 이를 제조행위⁴⁷⁾가 없다하여 제조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서울창고의 운용실태

- 2014년 8월 당시 ○○는 능창고와 서울창고의 김복(Superior) 2동(남창고 B 서울창고 C)과 이름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 2명(D 부장 E 대리)으로 플랫폼을 구성하여 본사 직원은 각 창고의 김복을 관리하고 각 창고의 김복은 각 창고 딜버의 재고관리, 반입반출, 배송관련 업무 및 (※)△▽ 직원관리 등을 충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능창고와 서울창고에 각각 (※)△▽와 ▼▼ 소유이나 창고관리는 ○○가 일하여 오고 있음
- 남서울창고에서 ○○의 SAP(○○의 업무처리 전산시스템)은 ○○ 김복에게만 접근이 어려워 담배 제고관리와 관련하여 ○○ 김복의 혀魄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이를 예로 들어 담배 판매시 ○○ 김복은 SAP에서 SRS 시스템(주문발주전산시스템)을 통한 발주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판매지시서(Sales Order)를 작성하여 출장을 출력하는 등 판매와 관련된 핵심업무 모두를 하고 있음 (※)△▽ 직원은 ○○ 김복의 지시를 받아 판매지 시에서 맞게 팔걸티켓(Pallet Ticket) 전여자금배송류별 수령 흥을 기재)를 작성하고 담배를 선별하여 제조장이며 상차하는 단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남·서울창고에 미남세반출을 하고 남·서울

46) "제조장이라 함은 위 물품을 제조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 내의 건조물을 말하는 바 그 부지의 연속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관리인에 의해 관리되며 그것이 1개의 제조장이라고 인정되는 실태에 있는 것"(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47) 「지방세법」 제53조에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남세 반출이 가능함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제조장'의 위치나 양태에 대해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가 없음. 이율리 「지방세법」에 미남세 반출 전에 반입할 장소를 사전에 실시하거나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만약 담배를 제조하는 기능이 있는 광장만 '다른 제조장'에 해당한다면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미남세 반출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제조기능이 있으면 거기서 제조하여 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공장에서 담배를 받아 공장으로 다시 반입한 뒤 다시 밖으로 공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어 실행하기 어려울 사업일. 이것은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것이 아님 따라서 미남세 반출이 용인되는 '다른 제조장'을 '담배를 제조하는 기능이 있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53조에 규정된 제조장 개념과 맞지 않음

창고에서 반출할 때 반출신고 및 담뱃세 신고·납부를 하여 제조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이를 관할 관청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미납세 반출은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협용되는 것이며 ○○가 그 동안 A공장에서 B·서울창고로 반출할 때 미납세 반출로 신고하고 이를 과세 관청이 인정한 것은 B·서울창고가 「지방세법」상 제조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B·서울창고는 「지방세법」 제47조 등에 따른 제조장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2014년 미납세 반출 시점이 아닌 2015년 실제 B·서울창고에서 반출할 때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가 지난 10여년 간 B·서울창고에 미납세반출을 하여 담배 공급의 편의를 누리고 B·서울창고에서 반출할 때까지 담뱃세 지역 납부에 따른 이득을 취해왔으면서도 그동안 평온하게 유지(문제가 되는 2014년 9월부터 12월 까지도 똑같은 의형을 취했으며, 이러한 행태는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까지 지속됨)되어 온 이와 같은 반출신고 및 과세 관행을 부인하며 제조장이 아닌 '보세창고'로 불법적으로 미납세 반출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담뱃세 탈루 혐의를 우선 모면하고자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 위와 같은 주장 및 그 외 주장에 대한 검토 내용 개요는 [별표 4] "이해관계자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결과"와 같다.

□□은 같은 물류센터 내라도 ■■ 임차구역은 ■■의 보관창고이지 □□의 제조장이 아니며 ■■의 구역으로 담배를 이송할 때 매매계약 체결,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행, 소유권 이전이 모두 발생하므로 '공급'의 전 단계인 '반출'은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 구역으로 반출행위가 일어난 2014년의 담뱃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 등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의 전 단계로 당연히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과 담뱃세 납부의무 성립 기준인 반출은 별개이다.

또한 ■■ 임차구역이 ■■의 보관창고로서 □□의 제조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의 제조장 내에 있기는 마찬가지로 ■■ 구역으로 담배를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제조장 울타리 밖으로 반출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반출이라 할 수는 없다.

설사 이를 반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출은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나 □□과 ■■는 담배의 매출·매입과 이에 따른 반출을 장부상으로만 처리하고 담배를 ■■의 임차구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 제조장 밖으로 실제 반출행위가 일어난 시점인 2015년의 담뱃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 위와 같은 주장 및 그 외 주장에 대한 검토 내용 개요는 [별표 4] "이해관계자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결과"와 같다.

【 별표 목차 】

[별표 1]	○○ 반출 신고량과 실제 반출량 차이 분석 명세	65
[별표 2]	■■■ 임자구역의 일별 제고 현황(2014년 9월~12월)	75
[별표 3]	담뱃세 기관별 추정세액 명세	76
[별표 4]	이해관계자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결과	77

[별표 1]

○○ 반출 신고량과 실제 반출량 차이 분석 명세

(단위: 갑)

일자	판매 신고 내역			실제 반출 내역						최종 반출 신고항 (A-B)	
	제조공장	비정고	서출청고	소계 (A)		비정고		서출청고		소계 (B)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총계 (14.9.1~ 12.31.)	104,639,500	260,912,170	42,988,500	400,517,119	69,240,080	33,331,500	179,188,319	3,500	301,783,339	100,753,771	
'14.9.1	-	2,557,000	3,106,000	5,663,000	2,048,500	508,500	3,160,000	-	5,216,000	2,441,500	
'14.9.2	-	1,855,500	2,990,500	4,846,000	1,643,000	241,500	3,078,000	-	4,901,500	1,511,500	
'14.9.3.	16,810,500	1,674,000	3,122,500	21,607,000	1,244,000	509,500	3,189,500	-	4,943,000	16,864,000	
'14.9.4.	16,717,000	2,680,000	4,865,500	24,352,500	2,212,500	492,000	4,987,500	-	7,082,000	16,353,500	
'14.9.5.	16,952,500	5,980,000	2,769,000	24,170,000	1,055,500	505,500	2,782,500	-	4,353,000	21,346,000	
'14.9.6.	5,081,000	-	5,081,000	-	-	-	-	-	-	5,081,000	
'14.9.7.	-	-	-	-	-	-	-	-	-	-	
'14.9.8.	-	-	-	-	-	-	-	-	-	-	
'14.9.9.	-	-	-	-	-	-	-	-	-	-	
'14.9.10.	-	-	-	-	-	-	-	-	-	-	
'14.9.11.	-	31,939,000	19,344,000	51,287,000	1,562,500	498,000	3,511,500	-	5,962,000	45,721,000	
'14.9.12.	-	516,500	-	516,500	1,840,500	502,500	2,990,500	-	5,333,500	5,333,500	
'14.9.13.	-	-	-	-	-	-	-	-	-	-	
'14.9.14.	-	-	-	-	-	-	-	-	-	-	
'14.9.15.	-	202,000	-	202,000	1,397,000	492,000	1,908,500	-	11,797,000	11,797,000	
'14.9.16.	-	213,000	-	213,000	1,886,000	742,500	2,565,500	-	5,224,000	10,223,500	
'14.9.17.	-	373,500	-	373,500	545,000	508,500	2,401,500	-	3,465,000	10,200,500	
'14.9.18.	-	654,500	-	654,500	1,128,000	504,000	1,974,000	-	1,806,000	12,365,500	
'14.9.19.	-	610,000	-	610,000	769,500	495,000	1,482,000	-	2,726,500	10,111,500	
'14.9.20.	-	-	-	-	-	-	-	-	-	-	
'14.9.21.	-	-	-	-	-	-	-	-	-	-	
'14.9.22.	-	184,000	-	184,000	1,398,500	253,500	2,661,500	-	4,318,500	10,358,500	
'14.9.23.	-	518,000	-	518,000	674,000	243,000	1,403,500	-	2,320,000	10,411,500	
'14.9.24.	-	382,500	-	382,500	550,000	247,500	1,156,000	-	1,953,500	10,171,500	
'14.9.25.	-	614,000	-	614,000	1,063,000	511,500	-	-	1,664,000	10,200,500	
'14.9.26.	-	1,010,500	-	1,010,500	1,108,500	954,000	2,197,500	-	4,269,000	10,249,500	
'14.9.27.	-	-	-	-	-	-	-	-	-	-	
'14.9.28.	-	-	-	-	-	-	-	-	-	-	
'14.9.29.	-	2,500,000	-	2,500,000	1,084,000	249,000	1,022,500	-	2,355,000	144,500	
'14.9.30.	-	37,302,000	-	37,302,000	791,000	256,000	1,782,500	-	2,828,000	34,479,500	
소계	56,221,000	91,166,000	35,222,500	104,214,500	23,981,000	8,713,000	44,283,500	-	79,977,000	397,257,000	

일자	반출 신고 내역			실제 반출 내역						최종반출 신고항 (A-B)		
	제조공장	비정고	서출청고	소계 (A)		비정고		서출청고		소계 (B)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14.10.1	-	165,000	-	165,000	-	1,282,500	517,500	5,062,500	-	7,462,500		
14.10.2	-	4,000	-	4,000	-	1,908,500	742,000	2,825,000	-	5,479,500		
14.10.3	-	-	-	-	-	-	-	-	-	-		
14.10.4	-	-	-	-	-	-	-	-	-	-		
14.10.5	-	-	-	-	-	-	-	-	-	-		
14.10.6	-	490,500	-	490,500	-	1,248,000	262,000	2,139,000	-	3,649,000		
14.10.7	-	1,024,000	-	1,024,000	-	1,715,000	466,500	2,087,000	-	4,288,500		
14.10.8	-	312,000	-	312,000	-	708,500	499,500	2,509,000	-	3,717,000		
14.10.9	-	-	-	-	-	-	-	-	-	-		
14.10.10.	-	401,000	-	401,000	-	622,500	240,000	1,445,000	-	2,307,500		
14.10.11	-	-	-	-	-	-	-	-	-	-		
14.10.12	-	-	-	-	-	-	-	-	-	-		
14.10.13	-	970,500	-	970,500	-	1,005,000	258,000	1,383,500	-	2,525,500		
14.10.14	-	1,384,000	-	1,384,000	-	909,500	249,000	1,555,500	-	2,714,000		
14.10.15	-	1,488,000	-	1,488,000	-	1,555,000	461,000	247,500	1,610,500	-	2,219,000	
14.10.16	-	914,500	-	914,500	-	1,068,000	248,000	2,536,500	-	3,548,500		
14.10.17	-	1,371,500	-	1,371,500	-	708,500	538,500	1,651,000	-	2,895,000		
14.10.18	-	-	-	-	-	-	-	-	-	-		
14.10.19	-	-	-	-	-	-	-	-	-	-		
14.10.20.	-	1,508,500	-	30,500	-	1,359,000	1,132,500	517,500	1,792,000	-	3,442,000	
14.10.21	-	989,000	-	989,000	-	972,000	496,500	1,881,000	-	3,349,500		
14.10.22.	-	1,260,000	-	1,028,000	-	2,460,000	491,000	502,500	1,656,202	-	2,649,702	
14.10.23	-	1,260,000	-	1,194,500	-	2,454,500	1,231,000	517,500	2,608,500	-	4,351,000	
14.10.24	-	1,338,000	-	1,498,000	-	2,884,000	721,500	489,000	1,571,000	-	2,181,500	
14.10.25	-	-	-	-	-	-	-	-	-	-		
14.10.26	-	-	-	-	-	-	-	-	-	-		
14.10.27.	-	1,356,000	-	910,000	-	2,356,000	1,382,500	252,000	2,792,500	-	4,427,000	
14.10.28	-	1,448,000	-	262,500	-	1,708,500	936,000	231,000	1,941,000	-	3,108,000	
14.10.29	-	1,665,500	-	1,580,500	-	38,500	1,291,000	720,000	246,000	1,726,500	-	2,692,500
14.10.30	-	1,380,000	-	39,437,500	-	6,403,000	247,229,500	831,000	248,500	1,878,000	-	2,963,500
14.10.31	-	-	-	-	-	-	-	-	-	-		
소계	9,703,500	56,943,500	-	6,741,000	-	13,368,000	20,437,000	6,039,000	44,478,202	-	72,354,202	

일자	판매 신고 내역			실체 판매 내역			현위반율 신고량 (A-B)		
	제조공장	부정고	서울창고	소계 (A)	판매	불법DC 이동	판매	불법DC 이동	소계 (B)
'14.11.1.	-	-	-	49,500	-	277,000	-	326,500	4,500,700
'14.11.2.	-	-	-	-	-	-	-	-	-
'14.11.3.	1,007,500	367,500	-	1,375,000	1,133,000	519,000	1,945,000	-	3,897,000
'14.11.4.	966,000	266,000	-	1,112,000	1,403,500	489,500	1,782,000	-	3,675,000
'14.11.5.	852,000	414,000	-	1,268,000	823,000	282,000	1,945,000	-	3,809,000
'14.11.6.	810,000	450,000	-	1,260,000	1,334,000	601,000	2,833,500	-	4,668,500
'14.11.7.	961,500	929,500	-	1,917,000	811,500	490,500	1,838,770	-	3,140,770
'14.11.8.	-	-	-	-	-	-	-	-	-
'14.11.9.	-	-	-	-	-	-	-	-	-
'14.11.10.	812,000	1,102,500	-	1,914,500	1,317,000	484,500	2,126,500	-	3,999,000
'14.11.11.	1,098,000	394,000	-	1,492,000	1,142,500	246,000	1,888,000	-	3,276,500
'14.11.12.	990,000	1,171,000	-	2,181,000	558,000	516,000	1,881,587	-	2,966,587
'14.11.13.	2,099,000	641,000	-	2,740,000	1,469,500	444,000	2,410,500	-	4,324,000
'14.11.14.	2,358,000	759,000	-	3,117,000	825,500	505,000	1,889,000	-	3,019,500
'14.11.15.	-	-	-	-	-	-	-	-	-
'14.11.16.	-	-	-	-	-	-	-	-	-
'14.11.17.	-	446,500	-	-	1,315,000	486,500	1,828,000	-	3,624,500
'14.11.18.	-	600,000	-	601,000	865,500	255,000	1,727,500	-	2,976,000
'14.11.19.	-	1,645,500	750,000	-	2,395,500	615,000	241,500	2,461,500	-
'14.11.20.	-	1,260,000	662,500	-	1,926,500	1,303,000	250,500	2,744,500	-
'14.11.21.	-	1,340,500	669,500	-	2,384,000	864,000	238,500	1,844,500	-
'14.11.22.	-	-	-	-	-	-	-	-	-
'14.11.23.	-	-	-	-	-	-	-	-	-
'14.11.24.	1,352,000	419,500	-	1,772,000	2,130,000	258,000	2,901,500	-	5,289,500
'14.11.25.	1,338,000	420,500	-	1,758,500	1,158,000	286,500	3,253,000	-	4,667,500
'14.11.26.	1,452,000	39,127,000	-	40,579,000	798,000	482,000	3,189,000	-	4,469,000
'14.11.27.	-	4,593,000	-	4,593,000	1,272,500	501,000	2,581,000	-	4,354,500
'14.11.28.	-	1,280,000	-	1,280,000	681,500	498,500	1,114,000	-	2,192,000
'14.11.29.	-	-	-	-	-	-	-	-	-
'14.11.30.	-	-	-	-	-	-	-	-	-
소계	20,348,500	56,735,000	-	26,013,500	21,797,500	7,913,500	44,263,351	-	78,974,351
									E309,143

일자	판매 신고 내역			실체 판매 내역			현위반율 신고량 (A-B)		
	제조공장	부정고	서울창고	소계 (A)	판매	불법DC 이동	판매	불법DC 이동	소계 (B)
'14.12.1.	-	15,800	-	75,000	883,500	493,500	795,000	-	2,172,000
'14.12.2.	500	302,380	-	302,380	1,217,000	480,000	3,244,500	-	4,947,500
'14.12.3.	-	486,000	-	486,000	1,702,000	26,000	2,280,500	-	4,248,500
'14.12.4.	-	458,750	-	458,750	1,387,000	604,000	2,845,000	-	4,739,000
'14.12.5.	-	400,000	-	400,000	844,500	519,000	1,885,500	-	3,249,500
'14.12.6.	-	-	-	-	-	-	-	-	-
'14.12.7.	-	-	-	-	-	-	-	-	-
'14.12.8.	-	542,250	-	542,250	976,000	513,000	1,415,500	-	3,906,000
'14.12.9.	-	467,570	-	467,570	1,321,500	256,500	2,368,500	-	4,141,500
'14.12.10.	3,829,500	950,820	-	4,550,120	1,576,500	513,000	2,983,150	-	5,072,650
'14.12.11.	4,773,500	22,235,000	-	21,008,500	1,520,500	496,500	2,820,500	-	4,807,000
'14.12.12.	7,527,500	4,711,800	-	12,299,000	825,000	244,500	2,030,500	-	3,183,000
'14.12.13.	-	3,217,000	-	3,217,000	-	-	-	-	3,217,000
'14.12.14.	-	2,546,000	-	2,546,000	-	-	-	-	2,546,000
'14.12.15.	2,132,500	88,000	-	2,520,000	1,274,000	249,000	1,664,500	-	3,177,500
'14.12.16.	-	3,596,000	-	3,596,000	1,376,000	547,500	2,658,500	-	4,762,000
'14.12.17.	-	4,159,500	-	4,159,500	932,000	487,500	2,083,000	-	3,502,500
'14.12.18.	-	4,161,500	-	4,161,500	1,085,500	523,500	2,728,500	-	4,337,000
'14.12.19.	-	306,000	-	306,000	822,000	519,000	1,998,000	-	3,139,000
'14.12.20.	-	-	-	-	-	-	-	-	-
'14.12.21.	-	-	-	-	-	-	-	-	-
'14.12.22.	-	3,926,000	-	3,926,000	850,000	211,500	794,500	-	1,916,000
'14.12.23.	-	627,000	-	627,000	1,089,500	256,000	2,271,500	-	3,605,000
'14.12.24.	-	1,023,500	-	1,023,500	729,500	256,500	2,098,500	-	3,085,000
'14.12.25.	-	-	-	-	-	-	-	-	-
'14.12.26.	-	-	-	-	-	-	-	-	-
'14.12.27.	-	-	-	-	-	-	-	-	-
'14.12.28.	-	-	-	-	-	-	-	-	-
'14.12.29.	-	934,500	-	934,500	1,630,500	582,500	2,947,020	-	5,100,020
'14.12.30.	-	1,015,000	-	1,015,000	587,000	249,000	1,755,000	-	2,801,000
'14.12.31.	-	-	-	-	-	-	-	-	240,000
소계	18,363,500	56,467,670	-	74,881,770	23,024,580	8,066,000	46,163,260	3,500	77,667,340

일자	반출 신고 내역			실체 반출 내역						허위반출 신고량 (A-B)		
	제조공장	부정고		서울창고	부정고		서울창고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총계 (15.1.1~ 8.30)	21,758,000	187,085,500	-	209,345,500	90,888,010	33,370,500	185,812,800	-	310,028,400	180,946,200	-	-
'15.1.1.	-	-	-	-	1,295,000	-	2,395,500	-	3,665,500	54,195,700	-	-
'15.1.2.	-	-	-	-	146,500	-	845,500	-	988,500	1,392,500	-	-
'15.1.3.	-	-	-	-	-	-	-	-	-	-	-	-
'15.1.4.	-	-	-	-	-	-	-	-	-	-	-	-
'15.1.5.	498,000	-	-	458,000	841,000	496,500	2,177,000	-	3,514,500	1,011,500	-	-
'15.1.6.	-	-	-	-	221,500	869,000	97,000	-	887,500	1,011,500	-	-
'15.1.7.	-	-	-	-	289,000	246,000	554,500	-	1,068,500	1,011,500	-	-
'15.1.8.	-	-	-	-	295,000	264,000	209,000	-	786,000	1,011,500	-	-
'15.1.9.	-	-	-	-	182,000	-	223,500	-	375,500	1,011,500	-	-
'15.1.10.	-	-	-	-	-	-	-	-	-	-	-	-
'15.1.11.	-	-	-	-	-	-	-	-	-	-	-	-
'15.1.12.	-	-	-	-	-	171,000	284,000	148,000	-	283,000	1,011,500	-
'15.1.13.	121,500	-	-	121,500	167,500	27,000	483,000	-	677,500	1,011,500	-	-
'15.1.14.	474,000	1,000	-	475,000	183,000	-	512,500	-	635,500	1,011,500	-	-
'15.1.15.	485,000	-	-	485,000	90,500	27,000	985,500	-	433,000	2,210	-	-
'15.1.16.	463,000	-	-	463,000	239,500	228,000	400,500	-	869,000	1,011,500	-	-
'15.1.17.	-	-	-	-	-	-	-	-	-	-	-	-
'15.1.18.	-	-	-	-	-	-	-	-	-	-	-	-
'15.1.19.	216,000	-	-	216,000	281,500	-	767,500	-	1,049,000	1,011,500	-	-
'15.1.20.	-	-	-	-	-	987,500	-	884,500	-	1,272,000	1,011,500	-
'15.1.21.	-	-	-	-	-	151,000	-	416,500	-	566,500	1,011,500	-
'15.1.22.	-	-	-	-	-	401,000	238,500	811,000	-	1,510,500	1,011,500	-
'15.1.23.	64,000	-	-	64,000	254,500	-	531,500	-	786,000	1,011,500	-	-
'15.1.24.	-	-	-	-	-	-	-	-	-	-	-	-
'15.1.25.	-	-	-	-	-	-	-	-	-	-	-	-
'15.1.26.	144,000	-	-	144,000	481,000	237,000	734,500	-	1,424,000	1,011,500	-	-
'15.1.27.	614,600	-	-	614,500	440,500	-	772,000	-	1,212,500	1,011,500	-	-
'15.1.28.	240,000	-	-	240,000	304,000	-	1,047,000	-	1,371,000	1,011,500	-	-
'15.1.29.	267,000	450,000	-	747,000	584,000	243,000	882,000	-	1,719,000	1,011,500	-	-
'15.1.30.	142,000	-	-	142,500	581,500	237,000	918,500	-	1,111,000	1,011,500	-	-
'15.1.31.	-	-	-	-	-	-	-	-	-	-	-	-
소계	3,680,000	451,000	-	4,111,000	7,927,000	3,077,000	16,185,500	-	27,109,500	4,011,500	-	-

일자	반출 신고 내역			실체 반출 내역						허위반출 신고량 (A-B)		
	제조공장	부정고		서울창고	부정고		서울창고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15.2.1.	-	-	-	-	-	-	-	-	-	-	-	-
'15.2.2.	505,500	-	-	-	505,500	-	734,500	-	1,311,000	-	2,105,500	-
'15.2.3.	1,908,000	-	-	-	1,908,000	-	521,000	234,500	829,000	-	1,354,500	321,500
'15.2.4.	1,270,000	-	-	-	1,270,000	-	249,000	-	888,000	-	947,000	883,000
'15.2.5.	951,000	-	-	-	951,000	-	588,500	-	1,496,500	-	2,080,100	241,500
'15.2.6.	1,500,000	-	-	-	1,500,000	-	412,000	228,500	991,000	-	1,632,500	441,500
'15.2.7.	-	-	-	-	-	-	-	-	-	-	-	-
'15.2.8.	-	-	-	-	-	-	-	-	-	-	-	-
'15.2.9.	450,000	-	-	-	450,000	-	981,000	30,000	1,621,000	-	2,632,000	121,500
'15.2.10.	1,174,000	-	-	-	1,174,000	-	1,207,000	231,000	1,488,000	-	2,326,000	557,500
'15.2.11.	920,000	-	-	-	920,000	-	492,500	479,000	1,519,000	-	2,490,500	317,500
'15.2.12.	1,180,000	57,000	-	-	1,181,000	-	1,082,500	461,500	2,415,500	-	4,010,500	121,500
'15.2.13.	1,259,000	-	-	-	1,259,000	-	716,500	514,500	2,043,500	-	3,274,500	142,500
'15.2.14.	-	-	-	-	-	-	-	-	-	-	-	-
'15.2.15.	-	-	-	-	-	-	-	-	-	-	-	-
'15.2.16.	322,000	-	-	-	322,000	-	1,223,500	276,000	2,064,000	-	3,063,500	141,500
'15.2.17.	2,070,500	-	-	-	2,070,500	-	1,661,000	252,000	3,092,000	-	5,006,000	423,500
'15.2.18.	-	-	-	-	-	-	-	-	-	-	-	-
'15.2.19.	-	-	-	-	-	-	-	-	-	-	-	-
'15.2.20.	-	-	-	-	-	-	-	-	-	-	-	-
'15.2.21.	-	-	-	-	-	-	-	-	-	-	-	-
'15.2.22.	2,403,500	-	-	-	2,403,500	-	-	-	-	-	-	2,403,500
'15.2.23.	655,500	-	-	-	655,500	-	725,500	231,000	1,299,500	-	2,256,000	140,500
'15.2.24.	950,000	-	-	-	950,000	-	513,000	238,500	615,000	-	1,426,500	145,500
'15.2.25.	582,000	-	-	-	582,000	-	261,000	244,500	882,000	-	1,367,500	144,500
'15.2.26.	-	-	-	-	-	-	630,500	250,500	789,000	-	1,970,000	157,500
'15.2.27.	-	-	-	-	-	-	416,500	282,500	988,500	-	1,837,500	157,500
'15.2.28.	-	-	-	-	-	-	-	-	-	-	-	-
소계	18,079,000	57,000	-	-	18,136,000	-	12,446,500	3,925,000	24,082,000	-	40,443,500	242,500

일자	반출 신고 내역				취수반출 신고항 (A-B)	
	실제 반출 내역					
	제조공장	부창고	서울창고	소계 (A)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153.1.	-	-	-	-	-	
'153.2.	- 63,500	- 60,500	1,007,500 238,500 1,886,000	- 3,132,000	- 187,700	
'153.3.	- 293,000	- 200,000	867,000 246,000 1,538,500	- 2,841,500	- 144,700	
'153.4.	- 176,000	- 118,000	466,000 241,500 1,483,000	- 2,110,000	- 134,000	
'153.5.	- 127,500	- 121,500	816,000 250,000 1,816,500	- 2,890,500	- 142,000	
'153.6.	- 337,000	- 337,000	550,500 260,500 1,184,770	- 1,985,770	- 124,770	
'153.7.	-	-	-	-	-	
'153.8.	-	-	-	-	-	
'153.9.	- 949,000	- 349,000	951,500 250,500 1,413,050	- 2,815,000	- 166,050	
'153.10.	- 1,522,000	- 1,152,000	897,000 247,500 1,412,000	- 2,816,500	- 165,500	
'153.11.	- 564,000	- 344,000	534,000 241,500 1,651,000	- 2,438,500	- 174,500	
'153.12.	- 918,000	- 316,000	879,000 246,000 2,063,500	- 3,188,500	- 270,500	
'153.13.	- 1,351,500	- 1,167,500	585,500 235,500 1,207,500	- 2,028,500	- 167,500	
'153.14.	-	-	-	-	-	
'153.15.	-	-	-	-	-	
'153.16.	1,000 1,091,000	- 1,082,500	862,000 235,500 1,413,000	- 2,610,500	- 167,500	
'153.17.	1,000 549,000	- 349,000	613,500 489,000 1,085,500	- 2,188,000	- 134,500	
'153.18.	- 1,019,500	- 1,019,500	479,000 267,000 1,317,000	- 2,123,000	- 144,500	
'153.19.	- 1,366,500	- 1,366,500	672,000 244,500 1,874,500	- 2,991,000	- 124,500	
'153.20.	- 1,317,000	- 1,317,000	669,500 247,500 1,272,500	- 2,169,500	- 172,500	
'153.21.	-	-	-	-	-	
'153.22.	-	-	-	-	-	
'153.23.	- 1,118,500	- 1,118,500	1,000,000 247,500 1,688,000	- 2,935,500	- 173,000	
'153.24.	- 1,309,500	- 1,309,500	640,000 250,000 1,533,000	- 2,432,000	- 113,000	
'153.25.	- 2,753,000	- 2,753,000	461,500 742,500 1,448,500	- 2,650,500	- 90,500	
'153.26.	- 2,995,000	- 2,995,000	891,000 729,000 1,661,000	- 3,211,000	- 141,000	
'153.27.	- 3,353,500	- 3,353,500	612,500 715,500 1,379,000	- 2,707,000	- 648,500	
'153.28.	- 3,516,000	- 3,516,000	-	-	- 336,000	
'153.29.	- 360,000	- 360,000	-	240,000	- 150,000	
'153.30.	5,000 3,987,500	- 3,972,000	944,920 454,500 1,398,000	- 2,795,430	- 1,171,070	
'153.31.	- 210,000	- 210,000	883,500 240,000 1,222,500	- 2,146,050	- 139,500	
소계	7,800 31,761,500	- 31,709,000	16,473,430 7,573,000 33,062,370	- 57,098,600	- 39,350,500	

- 43 -

일자	반출 신고 내역				취수반출 신고항 (A-B)	
	실제 반출 내역					
	제조공장	부창고	서울창고	소계 (A)		
	판매	광주DC 이동	판매	광주DC 이동		
'154.1.	- 1,821,000	-	1,621,000 1,054,000 308,000 3,460,000	-	- 4,820,000	
'154.2.	- 881,500	-	881,500 738,000 240,000 1,340,500	-	- 2,316,500	
'154.3.	- 902,500	-	902,500 801,500 240,020 1,460,000	-	- 2,701,520	
'154.4.	-	-	-	-	-	
'154.5.	-	-	-	-	-	
'154.6.	- 1,161,500	-	1,161,500 1,048,000 243,000 1,630,000	-	- 2,921,000	
'154.7.	- 1,283,500	-	1,283,500 705,000 244,000 1,469,500	-	- 3,418,500	
'154.8.	- 1,727,000	-	1,727,000 493,000 240,000 1,538,500	-	- 2,271,500	
'154.9.	- 1,361,000	-	1,361,000 1,089,000 234,000 2,101,030	-	- 3,424,030	
'154.10.	- 1,970,500	-	1,970,500 630,500 243,000 1,561,000	-	- 2,424,000	
'154.11.	-	-	-	-	-	
'154.12.	-	-	-	-	-	
'154.13.	- 1,286,000	-	1,286,000 981,000 243,000 1,383,000	-	- 2,607,000	
'154.14.	- 1,319,000	-	1,319,000 708,000 249,040 1,263,000	-	- 2,220,040	
'154.15.	- 1,656,000	-	1,656,000 484,500 246,000 1,571,500	-	- 2,352,000	
'154.16.	- 1,308,000	-	1,308,000 1,049,000 280,500 2,145,500	-	- 3,445,000	
'154.17.	- 1,561,000	-	1,561,000 613,500 243,000 1,578,000	-	- 2,414,500	
'154.18.	-	-	-	-	-	
'154.19.	-	-	-	-	-	
'154.20.	- 1,903,000	-	1,903,000 980,500 252,000 1,574,000	-	- 2,806,500	
'154.21.	- 2,081,000	-	2,081,000 904,500 483,000 1,423,500	-	- 2,311,000	
'154.22.	- 2,775,000	-	2,775,000 648,000 247,500 1,726,000	-	- 2,829,500	
'154.23.	- 3,282,500	-	3,282,500 1,447,000 496,500 2,561,500	-	- 4,538,000	
'154.24.	- 2,495,000	-	2,495,000 988,500 249,000 1,860,000	-	- 3,088,000	
'154.25.	-	-	-	-	-	
'154.26.	-	-	-	-	-	
'154.27.	- 3,917,000	-	3,917,000 1,074,000 261,000 1,479,000	-	- 2,814,000	
'154.28.	- 3,221,000	-	3,221,000 1,354,500 243,000 2,282,000	-	- 3,359,000	
'154.29.	- 3,126,500	-	3,126,500 571,500 496,500 1,734,500	-	- 2,808,500	
'154.30.	- 1,874,500	-	1,874,500 1,029,000 511,500 1,930,000	-	- 3,470,500	
소계	- 42,690,500	-	42,690,500 19,396,500 6,461,500 39,064,530	-	- 64,922,500	

- 44 -

일자	반출 신고 내역			실제 반출 내역			허위반출 신고량 (A-B)
	제조공장	비창고	서울창고	소계 (A)	비창고	광주DC 이동	서울창고
'15.5.1	-	-	-	-	-	-	-
'15.5.2	-	-	-	-	-	-	-
'15.5.3.	-	-	-	-	-	-	-
'15.5.4.	- 2,681,200	- 2,681,500	- 1,095,000	- 238,500	- 3,230,500	- 4,664,000	- 11,812,500
'15.5.5.	-	-	-	-	-	-	-
'15.5.6.	- 2,100,500	- 2,100,500	- 509,500	- 238,500	- 1,979,500	- 2,721,500	- 2,647,500
'15.5.7.	- 2,153,500	- 2,153,500	- 968,500	- 244,500	- 2,181,000	- 3,362,000	- 2,418,500
'15.5.8.	- 2,984,500	- 2,984,500	- 678,000	- 250,500	- 1,382,500	- 2,311,000	- 673,500
'15.5.9.	-	-	-	-	-	-	-
'15.5.10.	-	-	-	-	-	-	-
'15.5.11.	- 2,103,500	- 2,103,500	- 1,045,500	- 255,000	- 1,466,500	- 2,787,000	- 2,634,500
'15.5.12.	- 2,036,000	- 2,036,000	- 927,500	- 246,000	- 1,489,000	- 2,002,500	- 2,014,500
'15.5.13.	- 2,033,500	- 2,033,500	- 573,500	- 249,000	- 1,761,000	- 2,577,000	- 58,000
'15.5.14.	- 2,320,000	- 2,329,000	- 1,262,500	- 253,500	- 2,429,000	- 3,925,000	- 179,000
'15.5.15.	- 3,184,000	- 3,184,000	- 907,000	- 241,500	- 1,982,500	- 3,011,000	- 172,000
'15.5.16.	-	-	-	-	-	-	-
'15.5.17.	-	-	-	-	-	-	-
'15.5.18.	- 3,105,500	- 3,105,500	- 1,169,000	- 498,500	- 1,997,500	- 3,887,000	- 1,791,500
'15.5.19.	- 2,851,500	- 2,851,500	- 883,500	- 400,500	- 1,715,000	- 3,069,000	- 3,215,500
'15.5.20.	- 3,165,000	- 3,165,000	- 587,500	- 249,000	- 1,928,000	- 2,764,500	- 400,500
'15.5.21.	- 3,044,000	- 3,044,000	- 1,520,500	- 237,000	- 2,876,000	- 4,433,500	- 371,500
'15.5.22.	- 2,898,500	- 2,898,500	- 1,056,500	- 255,000	- 2,929,500	- 3,841,000	- 671,500
'15.5.23.	-	-	-	-	-	-	-
'15.5.24.	-	-	-	-	-	-	-
'15.5.25.	-	-	-	-	-	-	-
'15.5.26.	- 3,085,500	- 3,085,500	- 639,000	- 498,000	- 1,455,500	- 2,757,500	- 262,000
'15.5.27.	- 3,890,000	- 3,890,000	- 565,500	- 484,500	- 1,588,500	- 2,888,500	- 1,981,500
'15.5.28.	- 5,930,500	- 5,930,500	- 861,500	- 496,500	- 1,308,000	- 2,869,000	- 3,264,500
'15.5.29.	-	-	-	-	-	-	-
'15.5.30.	-	-	-	-	-	-	-
'15.5.31.	-	-	-	-	-	-	-
소계	- 50,374,500	- 50,374,500	- 15,883,500	- 5,655,000	- 34,588,500	- 56,127,000	- 62,374,500

일자	반출 신고 내역			실제 반출 내역			허위반출 신고량 (A-B)
	제조공장	비창고	서울창고	소계 (A)	비창고	서울창고	
'15.6.1	-	- 4,223,500	-	- 4,223,500	- 1,271,000	- 245,000	- 2,599,500
'15.6.2	-	- 3,103,500	-	- 3,103,500	- 995,000	- 435,500	- 1,561,500
'15.6.3	-	- 3,451,500	-	- 3,451,500	- 591,500	- 235,500	- 1,634,000
'15.6.4	- 10,000	- 3,497,500	-	- 3,497,500	- 1,149,500	- 431,500	- 2,473,000
'15.6.5	-	- 3,037,500	-	- 3,037,500	- 742,500	- 244,500	- 1,870,000
'15.6.6	-	-	-	-	-	-	- 2,056,500
'15.6.7	-	-	-	-	-	-	-
'15.6.8	-	- 2,918,500	-	- 2,918,500	- 997,000	- 354,000	- 1,624,000
'15.6.9	-	- 2,747,000	-	- 2,747,000	- 881,500	- 431,000	- 1,514,000
'15.6.10	-	- 2,697,500	-	- 2,697,500	- 518,000	- 250,500	- 1,538,000
'15.6.11	-	- 2,424,500	-	- 2,424,500	- 1,010,000	- 255,000	- 2,101,500
'15.6.12	-	- 2,720,000	-	- 2,720,000	- 693,000	- 247,000	- 1,518,500
'15.6.13	-	-	-	-	-	-	-
'15.6.14	-	- 2,555,500	-	- 2,555,500	- 1,021,500	- 255,500	- 1,319,000
'15.6.15	-	- 2,789,000	-	- 2,789,000	- 823,000	- 497,000	- 1,605,500
'15.6.16	-	- 2,384,500	-	- 2,384,500	- 514,000	- 241,500	- 1,678,500
'15.6.17	-	- 2,554,500	-	- 2,554,500	- 1,133,000	- 225,500	- 2,477,000
'15.6.18	- 1,500	- 2,778,500	-	- 2,778,500	- 791,500	- 251,500	- 1,697,000
'15.6.19	-	-	-	-	-	-	- 2,142,500
'15.6.20	-	-	-	-	-	-	-
'15.6.21	-	-	-	-	-	-	-
'15.6.22	-	- 2,840,000	-	- 2,840,000	- 994,000	- 238,500	- 1,701,000
'15.6.23	-	- 2,595,500	-	- 2,595,500	- 651,000	- 248,000	- 1,531,500
'15.6.24	-	- 2,681,000	-	- 2,681,000	- 553,500	- 175,000	- 1,650,000
'15.6.25	-	- 2,744,000	-	- 2,744,000	- 885,500	- 437,500	- 1,590,000
'15.6.26	-	- 2,559,000	-	- 2,559,000	- 744,000	- 241,000	- 1,664,500
'15.6.27	-	-	-	-	-	-	-
'15.6.28	-	-	-	-	-	-	-
'15.6.29	-	- 4,350,000	-	- 4,350,000	- 555,000	- 261,000	- 1,092,500
'15.6.30	-	-	-	-	- 806,500	- 243,000	- 1,261,500
소계	- 11,500	- 62,231,000	-	- 62,242,500	- 18,735,080	- 6,679,000	- 38,839,100
							- 64,253,200

주: 1. '반출신고 내역'은 ○○가 ◆시(제조공장, 비창고), 서울특별시(서울창고)에 반출신고한 자료이고, '실제반출 내역'은 비창고, 서울창고에서 도매업체 및 광주창고로 실제 배송된 내역을 ○○가 제출한 SAP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 '허위반출 신고량'에는 SAP 자료상 미납세재고 코드에서 반출재고 코드로 전환하는 것과 실제 배송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실무적으로 1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비창고 등의 '실제반출 수량'에는 제조공장에서 입시창고로 반출된 후 다시 비창고 등으로 재입고되었다가 재반출되는 수량도 포함되어 있음

3. 2014년 9. 30., 10. 30., 11. 26., 12. 11., 12. 12., 12. 13., 12. 14.의
7일은 위 주식 2와 같은 사유로 [표 16]의 허위반출 물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자료: ○○ 제출자료

[별표 2]

■■■ 일차구역의 일별 재고 현황(2014년 9월, 12월)

(단위: 갑)

일자	장부상 재고	실제 재고			일자	장부상 재고	실제 재고		
		매입량 (변동 + 요인)	외부배송량 (- 요인)	재고			매입량 (변동 + 요인)	외부배송량 (- 요인)	재고
9. 1	0	1,866,340	7,092,420	8,819,500	12. 1	0	1,567,000	7,051,520	18,444,000
9. 2	0	2,627,740	3,537,740	8,731,500	12. 2	0	412,100	2,861,220	17,431,000
9. 3	0	2,391,400	5,087,900	8,505,000	12. 3	12,477,120	862,500	1,377,160	-
9. 4	0	2,148,500	3,614,600	8,085,000	12. 4	10,223,380	166,000	2,477,300	16,996,500
9. 5	0	2,565,700	3,107,200	8,219,000	12. 5	9,110,340	-	1,160,660	16,995,500
9. 6	0	-	-	10,306,000	12. 6	1,293,520	-	-	-
9. 7	0	-	-	-	12. 7	9,110,340	-	-	-
9. 8	0	-	-	-	12. 8	9,947,700	2,474,600	1,687,480	17,025,000
9. 9	0	-	-	-	12. 9	8,028,220	286,000	2,253,480	16,911,500
9. 10	0	-	-	-	12. 10	6,509,720	-	1,563,500	16,631,500
9. 11	0	2,991,120	3,282,120	9,892,500	12. 11	4,978,160	173,000	2,232,240	17,082,500
9. 12	0	31,922,220	4,968,180	8,500,500	12. 12	5,388,600	1,445,000	1,404,240	17,215,000
9. 13	0	-	-	10,246,500	12. 13	5,388,600	-	-	-
9. 14	0	-	-	11,365,000	12. 14	5,388,600	-	-	-
9. 15	0	1,803,500	4,283,220	10,217,000	12. 15	5,013,400	1,681,300	2,689,400	19,144,000
9. 16	0	2,220,500	3,114,440	9,184,000	12. 16	9,724,500	25,000	1,679,480	17,805,500
9. 17	0	824,000	1,730,700	9,939,000	12. 17	3,133,160	404,100	1,469,960	17,980,000
9. 18	0	513,500	1,700,920	10,641,000	12. 18	2,817,060	750,500	1,464,000	19,280,500
9. 19	0	51,000	861,440	12,313,000	12. 19	2,189,560	109,100	1,729,800	20,259,000
9. 20	0	-	-	14,298,500	12. 20	2,189,560	-	-	21,651,000
9. 21	0	-	-	14,941,000	12. 21	2,189,560	-	-	22,511,500
9. 22	0	-	-	15,715,500	12. 22	1,482,300	1,649,600	1,639,660	22,181,500
9. 23	0	718,000	2,588,740	14,475,500	12. 23	1,191,620	494,100	1,398,460	22,131,000
9. 24	0	170,500	2,153,000	14,219,500	12. 24	1,019,500	282,060	1,009,840	21,819,000
9. 25	0	320,500	4,288,680	13,054,000	12. 25	1,019,500	-	-	23,347,000
9. 26	12,001,100	8,613,500	2,307,120	13,444,500	12. 26	794,000	795,800	3,381,000	23,249,000
9. 27	12,001,100	-	-	-	12. 27	794,000	-	-	24,131,500
9. 28	12,001,100	-	-	17,103,500	12. 28	794,000	-	-	25,058,000
9. 29	12,001,100	12,001,600	6,044,500	14,212,500	12. 29	497,500	2,111,120	1,751,620	24,048,500
9. 30	12,001,100	-	6,453,320	11,674,500	12. 30	1,099,000	6,023,000	6,336,920	22,902,000
	-	-	-	-	12. 31	24,830,000	24,919,000	1,388,000	22,082,000

주: 1. 매입량은 □□이 반출신고한 수량과 일치, 외부배송량은 ■■■가 다른 판매처에 판매한

기 위해 배송한 수량
2 재고조사 등을 하지 않은 날은 미기재
자료: 제출자료

[별표 3]

담뱃세 기관별 추징세액 명세

(금액단위: 원)

구분		남영세 통계 추징기준	담배소비세 발행자치부	저임금축제 행정자치부	국민연금연금공 모기부	폐기물부당급 환경부	연소성산연방화기금 기획재정부	기별소비세 국세청
	추징근거	「지방세법」 제61조, 제92조 「기별세법」 제153조	「기별세법」 제153조	「국민연금법」 제23조	「자본성 환성 및 자본증축전액 징수 법률」 제12조	「폐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기별소비세법」 제11조, 제12조	
○○	본세	109,120,991,205	39,993,243,420	13,014,200,325	51,739,086,190	1,848,547,638	531,191,850	63,105,561,781
	적소신고 기산세	68,035,052,148	42,702,815,436	—	—	—	—	25,242,236,712
	소계	237,155,913,351	81,676,058,856	13,014,200,325	51,739,086,190	1,848,547,638	531,191,850	88,347,828,493
□□	본세	39,206,497,000	9,014,880,000	3,017,175,000	11,994,810,000	428,592,000	123,150,000	14,680,220,000
	적소신고 기산세	15,773,052,000	9,920,984,000	—	—	—	—	5,862,088,000
	소계	54,981,549,000	18,935,544,000	3,017,175,000	11,994,810,000	428,592,000	123,150,000	20,482,308,000
계		202,137,402,351	100,611,802,856	16,031,375,325	63,732,886,190	2,277,109,038	654,341,850	108,830,138,493

주: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가산세 추징 근거 조항은 각각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는 포함되지 않음

[별표 4]

이해관계자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관계자	경점사항	주장 내용
○○ 남 세 의 무 성립 시기 관련	○○ 이경수 남세의무가 미 남세 반출 당시에 경립 하여 징수가 올여되었을 뿐이므로 - 2015년 반출·판매 시에 미납분을 당첨한 2014년의 세율에 따라 담배소비세 를 납부한 것은 정부	<p>○ 「지방세법」 제55조 제1호에 따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남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장에서 미납세 반출 정도로 나갈 때(반출) 분만 아니라 다른 예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미납세 반입된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에도 당연히 남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 다만 이율과 세 방지를 위해 미납세 반출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p>○ ○○은 2015년까지 10여년 간 △ 제조공장에서 ▲ 서출창고(보세창고)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반출로 처리·신고하다가 ▲ 및 서출창고에서 도예상 등에 반출하는 때 담배 반출신고 및 담배소비세 등 담배세를 신고납부함</p> <p>○ 따라서 보정고 등에서 도예상 등에 반출·판매한 시점이 2015년으로 2015년 당시의 인상권 세율로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p> <p>■ 개별소비세 세율 변경 전 승용차등차 제조장에서 하차점으로 미납세 반출 하였다가 하차점에서 해당 물품을 반출·판매할 당시 세율을 변경되면, 하차점 반출 당시의 세율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p>
○○ □□ □□ ■ 서출 창고의 제조장 해당 여부	<p>○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만 남세의무가 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은 2014년 중에 △ 제조공장에서 ▲ 서출창고로 담배를 미납세로 반출한 후 이를 2015년 중에 반출·판매 하였더라도 - ○○은 2002년 10월부터 ▲ 서출창고를 제조장 창고로 운용하면서 ▲ 서출창고의 직원을 파견하여 제조당부의 보관 업무 등을 직접 관리하여 왔으며 - 담배보관창고가 다른 사정으로 부지 뒷에 있을 뿐인데도 이를 제조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이풀러 「지방세법」 제49조, 제55조 및 제60조 등에 담배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담배 반출신고를 하고 담배소비세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5조 제1호에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 「지방세법」 제55조 제1호의 규정은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미납세반출 요건을 하니의 호에 규정한 것일 뿐 - 각각 제조자의 경우 제조장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을 허용한 것임 - 만약 ○○의 주장대로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이 허용되는 것이라면 보세구역에서 미납세 품종을 반출하는 때에는 남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 제조자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과세 당국도 담배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됨 	<p>○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남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장에서 미납세 반출 정도로 나갈 때(반출) 분만 아니라 다른 예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미납세 반입된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에도 당연히 남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 다만 이율과 세 방지를 위해 미납세 반출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p>○ ○○은 위의 같이 2015년까지 10여년 간 △ 제조공장에서 ▲ · 서출 창고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반출로 처리·신고하다가 ▲ 및 서출창고에서 도예상 등에 반출하는 때 담배 반출신고 및 담배소비세 등 담배세를 신고납부함</p> <p>○ ○○은 과세관청 풍화 두 칭고를 보세구역이 아니라 제조장으로 여겨 찾고 그러한 과세관행이 지난 10여년 간 지속·확인된 것임</p> <p>○ ○○은 위 세법 제34조에 의의(義理) 있는 경우를 조세포탈로 보는 것은 부당</p> <p>- 소위 「전산반출」은 수입업자 시절부터 권리코드를 변경하여 업무관행에 따른 것임</p> <p>○ 한편 반출세고를 입사창고에 보관하나 보상고에 다시 반입한 후 반출하는 등 가정행위를 통해 5,055만 원을 반출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창고의 재고를 보상고에서 통합하여 관리했다는 절 입사창고에는 판매를 위한 저포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결국 판매를 위해서는 보상고로 재반입 되어야 한다는 점 고려할 때 - 판매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반출 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철 입사창고를 통해 적법하게 반출신고 및 것을 기정한 것이면서도 - 과세관청이 반출신고 외 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또한 사기나 그 위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함한 경우에 해당 <p>■ ○○은 9월 초 입사창고로 일시 대량 반출한 행위를 「밀박갑 인상소에 따른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요대응을 위한 것이라면 미납세 재고 상태로 침고와 출입부면 되는 것지 굳이 반출신고에 담뱃세를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었을</p> <p>○ ○○가 말하는 업무 관행은 도매업자 둘로 구분해 주문을 받은 물량을 실제 반출 하루 전에 남세제고로 코드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거래대상으로 경로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공사·부문도 많이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조작한 것임</p> <p>■ □□ 제조장 내 반출신고의 적법 여부</p> <p>○ 제조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남세의무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생활하는 데에 생활하는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품류센터 내리도 ■■■ 임차 구역 존 ■■■의 보관하고자 □□의 제조장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 제품을 ■■■ 구역에 이송한 시점에 제품이 제조장으로부터 <p>○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의 전 단계에 당연히 반출 이후에지는 것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소유권 이전 품과 달리세 납부의무 생활 기준은 반출을 벗어남 -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보세구역 내에서 예에 품으로 담배의 소유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세구역 외로 반출하여 담배소비세의 남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는 예전의 수입판매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예가 있음(한부상장-54, 2014. 3. 20) ○ 한편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에 따르면 반출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친척처분 되는 경우 「제조법」 제6조도 갈증을

이해관계자 의견		
관계자	경정사항	주장 내용
제조장 내 반출신고의 책임(내부)		<p>반출되었으므로 □□의 반출신고는 적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호 예비계약서 결재 대금수수·세금계산서 발행, 소유권 이전이 모두 발생하였으나 공급·의 전 단계인 반출은 당연히 이루어진 것임 ○ □□은 제조업체(담배 위탁생산로서, ■■는 라이센스 판권자로서 각자 조작을 갖추어 독립적으로 반출하는 바 - 이미 제조자의 영업을 벗어나 판매될 제품에 대해서 최후 거래처의 재판매 시점에 제조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합 ○ 따라서 ■■은 반출 형태가 일어난 2014년의 담뱃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함 <p>제외하고 과세대상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시장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담배가 반출되기 위해서는 담배를 제조장 출하리 빛으로 현실적·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제조장 출하리 내에서 반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한 가치로 되어야 함 ○ 그러나 ■■은 2014년 1월 현재 제고 2,463만 원의 경우 제조장(담배 제조자인 □□의 공장 내에 소재하는 ■■의 입차구역으로) 반출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예전히 □□의 제조장 출하리 밖으로 이동되지 않았으며 - 제조장 내 반출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제조장 내 소비나 한 가치로 된 경우에도 해석하지 않아 반출로 인정될 수 없음 ○ 이해관계자의 주장대로 ■■ 구역으로의 이동을 반출로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 반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담배를 ■■의 입차구역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이동시켰어야 함 - 이해관계자는 담배를 물리적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과 ■■는 담배의 예출·예입과 이에 따른 반출을 정부상으로만 처리하고 담배를 ■■의 입차구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5. 1. 1. 이후에 □□ 제조장 청고에서 담배를 반출한 실질에 따라 실제 반출형의 당시의 세율, 즉 인상된 세율 등에 따라 달빛새를 부과징수하여야 함
□□	조세포탈 해당 여부	<p>○ 설사 □□의 반출신고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해석 차이에 따른 것으로 고소 신고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반출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담뱃세 인상처액 만큼 이율을 얻지 못하는 점(■■의 이율) 등을 고려할 때 - □□의 입장에서는 시기나 그 뒤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조세포탈로 볼 수는 없음 ○ 아울러 2014. 9. 12. 과다 반출원 출령은 오류 확인 후 처감조정 되어 담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로 이루어지지 않음 <p>○ □□이 형식적으로 이름을 쓰면서 없다는 말은 있으나 □□과 ■■는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특수관계자이다. 일대차 계약에 서명한 두 회사의 대표자가 통일인으로서 거래의 조작을 통해 합동의 이익을 추구할 이유가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가 공동으로 사기 그 뒤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고 지적하는 것임 - 즉 □□과 ■■가 공론으로 담배 실물의 반출행위 없이 전산 조작일력만으로 담배의 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하는 등으로 - 2014년 인상 전 달빛새를 신고·납부하고 2015. 1. 1.부터 제조장으로부터 실제 반출하면서는 반출신고 및 달빛새 신고부를 하지 않음으로서 - 달빛새비세 등 인상처액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함 <p>○ 한편 9. 12.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923만 원을 차리인 행위에 대해 이후 처감조정 되었다고는 하나 잘못 신고된 반출량을 치감한 게 아니고 □□의 제고를 조정한 데 불과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결예고시 시행 이후 반출량 제한을 넘지 않은 새 ■■로의 반출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새금 인상처액 차액과 연결되는 연말 반출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 - 즉 고시 시행 후에는 반출량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반출량은 정상적인 판매량에 소진되므로 연말 반출재고의 여력을 고시 시장전에 비출되어야 하는 것임

- 53 -

조치할 사항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서로 협의하여 [별표 3] “담뱃세 기관별 추징세액 명세”와 같이 「지방세법」 제61조 제1항 등에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2015년에 제조장 등에서 실제 반출한 담배 106,238,370갑에 대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담뱃세 차액계 169,120,861,203원(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과소신고 가산세 각각 42,792,815,436원 및 25,242,236,712원 별도)을, □□주식회사가 2015년에 제조장 등에서 실제 반출한 담배 24,630,000갑에 대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담뱃세 차액계 39,208,497,000원(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과소신고 가산세 각각 9,920,964,000원 및 5,852,088,000원 별도)을 각각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실제 담배의 제조장 반출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각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등에 해당되는 혐의가 있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한국영업소 및 대표이사 등 각 관련자들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및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첨매석고시를 위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한국영업소를 각각 「불가인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